

# 제천시 하수도 사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1206
------------	------

제출년월일 : 2007. . .

제 출 자 : 제 천 시 장

## 1. 제 안 이 유

- 「하수도법」 및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의 오수·분뇨에 관한 규정이 「하수도법」으로 통합 '06. 9. 27일 전부개정·공포되어, '07. 9. 28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하수도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 하수도법령 통합에 따른 표준 하수도조례안이 환경부로부터 시달되어 「제천시 하수도 사용 조례」를 전부개정 하고자 함.

## 2. 주 요 내 용

- 중수도의 설치 및 관리(안 제7조 내지 제10조)
- 공공하수도사용료 부과·징수(안 제14조 내지 제16조)
- 하수도사용료(안 제14조, 별표 2 및 별표 3)
- 개별건축물 등에 대한 원인자부담금(안 제19조) : 환경부장관이 고시한 오수발생량 산정기준 적용
- 분뇨 수집·운반 수수료 등의 부과·징수(안 제22조 및 제23조)
- 공공하수도 사용료 등 감면(안 제24조)
  -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의 규정에 의한 재난사태 선포지역 또는 특별재난지역의 대상자
  - 중수도를 설치하는 경우 사용량에 해당 하는 업종별 요금의 20%

### 3. 관계법령 : 불임

- 「하수도법」(일부개정 2007.4.11 법률 제8371호)
- 「하수도법시행령」(전부개정 2007.9.27 대통령령 제20289호)
- 「하수도법시행규칙」(일부개정 2007.10.24 환경부령 제251호)
- 「지하수법」(일부개정 2007.5.17 법률 제8466호)
- 「건축법」(일부개정 2007.10.17 법률 제8662호)
-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일부개정 2007.5.17 법률 제8466호)
- 「지방세법」(일부개정 2007.8.3 법률 제8621호)

### 4. 의안전문 : 불임

### 5. 하수도사용요율 및 하수도사용업종별구분표 신·구조문 대비표 : 불임

첨부 : 1. 제천시 하수도 사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부.

2. 하수도사용요율 및 업종별구분표 신·구조문 대비표 1부.
3. 관계법령 1부.
4. 입법예고 사본 1부.
5. 표준 하수도조례안 1부.
6. 물가대책위원회 심의결과 1부. 끝.

## 제천시 하수도 사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천시 하수도 사용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천시 하수도 조례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제천시(이하 “시”라 한다)의 하수도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하여 「하수도법」(이하 “법”이라 한다)과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하수처리구역 지정기준)** 법 제15조 및 규칙 제7조의 규정에 따라 하수처리구역을 지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공공하수도(하수관거를 말한다)로부터 50미터 이내로 하여야 한다.

**제3조 (사용개시 등의 신고)** ① 배수설비를 설치 완료하고 공공하수도를 사용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이 조례 시행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30일 이내에 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배수설비의 사용을 개시·중지·폐지하거나 중지중에 있던 것을 다시 사용할 때

2. 지하수·하천수·온천수·해수·기타 상수도 급수에 의하지 아니하는 물을 사용하고자 할 때

3. 물의 사용량과 하수의 배출량이 현저히 다를 때

4. 기타 배출되는 하수의 양태가 이 조례에 의하여 사용자에게 적용되는 요금의 적용구분과 달라졌을 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개시 등의 신고가 있는 것으로 본다.

1. 「제천시 수도급수 조례」의 규정에 의한 급수 사용개시 신고

2. 제11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이 공사를 시행한 경우

3. 「지하수법」 제7조 및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지하수 개발·이용의 허가

### 및 지하수 개발·이용의 신고

**제4조 (일시사용 신고)** 토목공사 또는 건축공사, 기타의 사유로 공공하수도를 일시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조례시행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5조 (하수관거 준설 등)** ① 시장은 하수관거의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매년 1회 이상 하수관거상태를 점검하여야 한다.

② 하수관거의 청소 및 준설은 매년 1회 이상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침수·장마 등 재해발생 방지 또는 하수의 원활한 흐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청소 및 준설을 하여야 한다.

**제6조 (점용시설 또는 공작물의 준공검사 등)** ① 법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점용허가를 받은 자는 허가받은 시설 또는 공작물의 설치 등을 완료한 때에는 조례시행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의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② 점용허가를 받은 자는 점용기간이 만료된 때에는 설치한 시설 또는 공작물 등을 제거하고 원상으로 복구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원상으로 복구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조 (중수도의 설치신고 및 확인)** ① 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해 중수도를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도서를 구비하여 미리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중수도 사용계획서

2. 처리시설의 위치, 용량, 사업비, 사업기간 등을 기재한 사업개요서

3. 중수도 시설용량의 산출근거를 기재한 서류

4. 중수도와 관련된 설계도, 평면도

② 시장은 제1항의 신고를 받은 경우 시설을 확인하여 중수도로 인정되는 시설분에 대해서 중수도 설치확인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③ 중수도 설치확인서를 교부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신속히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중수도 시설의 확장계획

2. 중수도 시설의 운전중지

### 3. 사업자 또는 관리자 변경

④ 법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해당되지 않는 자가 중수도를 설치하여 수도요금 또는 하수도사용료를 경감 받고자 할 때에는 제1항 내지 제3항을 준용한다.

⑤ 시장은 신고사항 및 중수도 시설사항 등을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직접 조사하게 하여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제8조 (중수도의 관리)** 중수도를 설치한 사업자 또는 관리자는 중수도의 관리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저수조는 수량 부족에 대비하여 수돗물에 의한 보급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하며 이 경우 중수가 수돗물과 혼합되지 않는 구조로 할 것.
2. 송·배수시설은 수도, 전기, 기타 배관과 구별될 수 있도록 할 것.
3. 이용설비에 “중수도 사용”이라는 표지를 할 것.
4. 중수도의 운전기록 및 수질검사 등의 관련 서류를 기록·보관할 것.

**제9조 (중수도의 용도제한)** 중수도의 용도는 수세식 변소용수, 살수용수, 조경용수, 세차·청소용수 등으로 사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10조 (중수도의 수질검사)** ① 중수도를 설치한 사업자 또는 관리자는 수질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수질검사의 횟수는 수소이온농도(pH), 냄새, 색도, 탁도, 외관 및 잔류 염소(결합)에 대하여는 매일 1회 이상,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 화학적 산소요구량 및 대장균군수에 대하여는 매월 1회 이상으로 한다.

③ 채수장소는 사용장소에 가장 가까운 저수조의 출구 부근으로 한다.

④ 중수도를 설치한 사업자 또는 관리자는 수질검사의 결과를 기록·유지하여야 하며, 그에 따른 서류를 보관·관리하여야 한다.

**제11조 (시장의 공사시행)**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배수설비의 설치·변경 또는 폐지공사를 시행할 수 있다.

1. 도로공사 등 시행과 연계하여 배수설비 공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2. 법 제2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내용과 다르게 설치되었거나 규칙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배수설비의 설치기준 및 구조기준에 위배하여

설치된 배수설비에 대하여 개선 명령하였으나, 이를 계속 이행하지 아니할 때

### 3. 배수설비 설치자로부터 공사시행 요청이 있을 때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이 공사를 시행하는 때에는 그 공사비용을 배수설비 설치자가 부담한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사비는 자재비, 시공비, 지장률 이전비, 도로의 복구비, 일반행정관리비 등 공사에 소요되는 총 비용으로 한다.

④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를 시행하는 경우에는 그 공사에 소요되는 비용을 법 제73조의 규정에 따라 배수설비 설치의무자에게 징수 할 수 있다.

⑤ 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공사비용은 공사비의 개산액을 선납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선납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2조 (배수설비 준공검사)** ① 법 제27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배수설비 설치의무자가 준공검사를 받고자 할 때에는 별표 1 서식의 배수설비 준공검사 신청서에 배수설비 및 접속부분의 설치시공 전·중·후의 사진을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법」 제18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 사용승인이 필요한 경우 배수설비 준공검사 신청서를 건축물 사용승인 신청시 함께 제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법 제27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배수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자의 신고사항 및 규칙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배수설비 설치 기준 및 그 구조기준 등에 적합하게 설치되었는지 여부를 검사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3조 (배수설비의 유지·관리)** 법 제27조제6항의 규정에 따른 배수설비의 유지·관리는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1. 배수설비 설치자는 하수가 공공하수도로 유입되도록 하여야 하며 당해 배수설비로 인해서 공공하수도의 기능장애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2. 시장은 필요한 경우 하수가 발생하는 토지의 경계로부터 공공하수도에 연결된 부분까지의 배수설비를 유지·관리할 수 있다.

**제14조 (공공하수도 사용료)** ①법 제65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하수도 사용료는 법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사용 공고된 배수구역 또는 하수처리구역을 대상으로 징수한다.

②공공하수도 사용료는 공공하수도로 배출하는 하수의 양과 업종에 따라 별표 2의 산정기준에 의하여 부과·징수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업종별 구분은 별표 3에 의한다. 다만, 단일시설 내에서 하수가 복합적으로 발생하는 때에는 분리가 가능한 경우를 제외하고 주된 하수가 발생하는 업종으로 구분하며, 주된 하수가 불분명할 경우 하수도 사용 요율이 높은 업종의 요율을 적용한다.

④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2조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별도 배출허용기준이 고시된 지역의 경우 시장은 별표 2에 의한 공공하수도 사용료 외에 별표 4에 의한 수질하수도사용료를 추가로 징수 할 수 있다.

**제15조 (공공하수도 사용료의 납기와 징수방법)** ①공공하수도의 사용료는 상수도 급수 사용료와 납기를 같이하며, 수도요금 고지서에 함께 고지하여 동시에 징수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방법을 따로 정하여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③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하수도를 일시 사용하는 경우의 하수도 사용료는 신고 신청서에 추산하여 선납토록 하여야 하며, 그 사용을 완료하였을 때에는 정산하여 환불 또는 추징한다. 다만, 공공하수도의 사용신고 기간이 2개월을 초과할 경우에는 2개월마다 2월분에 해당하는 사용료를 추산하여 선납토록 하여야 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하수도의 사용료를 징수할 경우 시의 상수도사용료 징수업무 처리부서에 위탁하여 징수하고, 위탁경비 부담금은 위탁자와 수탁자의 협의에 의하여 부담한다.

⑤ 계측기의 고장으로 인하여 사용료 부과가 불가능한 경우 부과당월 기준 이전 3월분을 평균하여 부과·징수한다.

**제16조 (하수배출량의 산정)** 공공하수도 사용료 부과를 위한 하수배출량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산정한다.

1. 공공하수도의 사용자가 상수도사용자(전용 상수도사용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인 경우에는 상수도급수량을 하수배출량으로 본다.
2. 공공하수도의 사용자가 상수도사용자가 아닌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신고된 양을 시 담당공무원의 확인에 의하여 확정한다.
  - 가. 「지하수법」 제7조 또는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하수 개발·이용의 허가 또는 신고를 한 경우에는 지하수 이용량
  - 나. 하천수, 온천수, 해수 기타의 경우에는 제3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신고량
  - 다. 물의 사용량과 하수의 배출량이 현저히 다를 경우에는 제3조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신고량
3. 공공하수도의 사용자가 상수도 사용자이면서 지하수 등을 겸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상수도급수량과 지하수 등의 사용량을 합산한 수량을 하수배출량으로 본다.

**제17조 (하수배출량의 조사)** ① 시장은 제16의 규정에 의한 하수배출량의 인정이 적절하지 못하다고 판단하거나 공공하수도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배출되는 하수의 양 또는 질을 직접 조사하게 하거나 조사를 위하여 계측장치를 설치할 수 있다. 다만, 사용자가 하수배출량을 입증하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공인기관의 검사를 받은 계측장치를 사용자 부담으로 설치토록 할 수 있으며, 계측장치 설치 후 봉인은 시장이 한다.

② 사용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고, 설치된 계측장치를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③ 사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제1항의 계측장치를 훼손 또는 망설하였을 경우 즉시 원상 복구하여야 하며, 계측장치의 검사 유효기간이 경과되었거나 자연고장 발생시에도 또한 같다. 이 경우의 하수배출량은 최근

6개월 중 최대치에 해당하는 월의 하수량을 적용할 수 있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사한 하수의 양이 신고한 하수배출량과 다를 때에는 조사결과를 기준으로 하여 하수배출량을 조정할 수 있다. 다만,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8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폐수배출량 측정기기를 설치한 경우에는 동 기기에 의해 측정된 폐수량을 하수배출량으로 볼 수 있다.

⑤ 계측장치 설치 후 설치장소에 계측기 점검 및 검침에 방해가 되는 물건의 적치, 공작물 설치 등을 하여서는 안 된다.

**제18조 (공공하수도 점용료)** ① 시장은 법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공공하수도의 점용을 허가를 한 때에는 별표 5의 기준에 따라 점용료를 징수한다.

② 점용료는 점용기간에 따라 산정한다.

③ 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점용하는 자에 대하여는 사실상 점용이 개시된 날부터 점용료를 산정하여 징수한다.

④ 시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점용료를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점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제19조 (개별건축물 등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① 법 제6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원인자부담금의 산정기준·징수방법 등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1. 오수발생량은 영 제24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시한 오수발생량 산정 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2. 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 오수발생량은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 가. 신축·증축·용도변경 등 각각의 행정행위로 인한 오수발생량이  $10\text{m}^3/\text{일}$  이상인 경우 전체 오수발생량
  - 나. 수회에 걸쳐 이루어지는 신축·증축·용도변경 등의 행정행위로 오수발생량이  $10\text{m}^3/\text{일}$  이상인 경우  $10\text{m}^3/\text{일}$ 을 초과하는 양
3. 건축물 등의 오수발생량은 해당 건축물 전체를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불가피한 경우 건축물 소유자 별로 산정할 수 있다.
4. 원인자부담금의 금액은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 오수발생량( $\text{m}^3/\text{일}$ )에 단위단가(원/ $\text{m}^3/\text{일}$ )를 곱하여 산정한다.

5. 오수발생량  $1m^3$ /일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는 별표 6의 산정방식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시보 또는 시 흠페이지나 게시판에 공고하여야 한다.
6. 원인자부담금의 징수방법 및 시기 등은 다음과 같다.
  - 가. 부과시기는 건축물 신축, 증축, 개축·재축 및 건축물 용도변경 등에 의한 인허가시 부과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나. 징수(납부)시기는 건축 준공 허가전으로 하되, 용도변경의 경우, 용도변경 인·허가 혹은 승인 전으로 한다.

②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태행위에 해당하여 원인자부담금을 부과·징수한 경우 또는 원인자가 태행위 지역에서 발생하는 하수를 적정처리 할 수 있는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한 경우에는 당해 지역 내 건축물의 증축 및 용도변경 등에 대해서는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제20조 (타공사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① 법 제6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타공사에 대한 원인자부담금은 당해 공사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를 타공사의 시행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원인자부담금은 타공사를 하는 자와 시장이 협의하여 산정한다.

③ 시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가 성립되지 않을 경우 타공사를 하는 자에게 법 제16조의 규정에 따른 허가를 받아 필요한 공사를 시행하도록 할 수 있다.

**제21조 (태행위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① 법 제6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태행위에 대한 원인자부담금은 태행위에 의해 발생되는 하수량을 처리할 수 있는 공공하수 처리시설 설치비용과 당해 지역에서 발생하는 하수를 공공하수도로 연결시키기 위한 하수관거 설치비용의 전액을 사업시행자에게 부과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하수처리시설 설치비용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산정한 하수발생량에 단위단가(원/ $m^3$ /일)를 곱하여 산정한다.

#### 1. 하수발생량 산정

가. 하수발생량은 태행위의 준공년도에 해당하는 시의 하수도정비기본

계획의 하수발생량 원단위(타행위의 준공연도가 하수도정비기본계획 목표연도의 중간일 경우, 직선보간법으로 선정한다)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 나. 가목에 의한 하수발생량 산정시 타행위 지역안의 기존 건축물에서 발생하는 하수량은 제외한다.
  - 2. 하수발생량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는 제19조제1항제5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별표 6에 따라 산정한다.
-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하수관거 설치비용은 타행위의 부지경계에서 기존 공공하수관거까지 하수를 유입시키기 위한 하수관거 설치에 소요되는 전체 비용으로 하며, 기존 공공하수관거의 용량이 부족한 경우 용량 확대 등을 위한 비용을 추가로 부과·징수할 수 있다.
- ④원인자부담금은 타행위 개발계획 승인시 부과하고 준공전 납부토록 한다.

**제22조 (분뇨 수집 등의 의무제외 지역)** 법 제41조제2항 및 규칙 제37조 규정에 의한 분뇨수집 등의 의무제외 지역은 차량의 출입이 어려워 분뇨의 수집·운반이 거의 불가능한 지역으로 한다.

**제23조 (분뇨 수집·운반 수수료 등의 부과·징수)** ①시장은 법 제41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분뇨를 수집·운반 및 처리함에 있어 수수료를 다음 각 호와 같이 부과·징수한다.

- 1. 분뇨(오수처리시설·정화조의 오수 및 찌꺼기를 포함한다)의 수집·운반 및 처리 수수료는 별표 7의 기준에 따라 산정하여 부과·징수한다.
  - 2. 분뇨의 수집·운반을 분뇨수집·운반업자에게 대행시킨 경우에는 대행업자로 하여금 수수료를 징수하게 할 수 있다.
  - 3. 분뇨수집·운반업자는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징수한 수수료 중 분뇨처리에 관한 수수료는 반입한 다음날까지 시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 ②제1항의 수수료를 부과·징수하는 경우에는 당해 건축물의 소유자에게 부과·징수한다. 다만, 소유자에게 부과·징수함이 곤란한 경우는 당해 건축물의 관리자 또는 사용자에게 부과·징수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분뇨수집·운반업자가 분뇨처리 수수료를 납부한 경우에는 분기말 다음달 20일까지 납부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교부금으로 교부하여야 한다.

**제24조 (감면 등)**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이 조례 시행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공하수도 사용료, 공공하수도 점용료, 분뇨 수집·운반·처리 수수료, 원인자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다.

1.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의 규정에 의한 재난사태선포지역 또는 특별재난지역의 대상자

2. 제7조에 따라 중수도를 설치하여 사용하는 자

3. 공공하수처리시설 재이용수를 공급받아 사용하는 자

4. 시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조례시행규칙으로 정하는 자

② 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중수도 또는 재이용수 사용자에 대한 공공하수도 사용료 감면기준은 별표 8과 같다.

**제25조 (이의신청)** ① 공공하수도 사용료, 공공하수도 점용료, 분뇨 수집 운반·처리 수수료, 원인자부담금의 부과·징수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그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시장에게 이의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의 방법과 처리절차 등에 관하여는 「지방세법」 제73조 및 제75조 내지 제79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6조 (가산금 및 독촉)** ① 시장은 공공하수도 사용료, 공공하수도 점용료, 분뇨 수집·운반·처리 수수료, 원인자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때에는 체납된 금액에 대하여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있어서 시장은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은행납인 경우에는 <50일> 이내)에 10일이내의 납부기한을 불인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제27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 시행과 동시 「제천시오수분뇨및축산 폐수의처리에관한 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제3조(공공하수도 사용료 및 업종의 구분 적용례) 제15조 별표 2, 별표 3의 규정은 이 조례 시행일에 속하는 달의 다음달 검침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가산금 부과에 관한 적용례) 이 조례 시행후 부과하는 공공하수도 사용료 · 점용료 · 원인자부담금 · 수수료, 기타 납부금의 체납액에 부과하는 가산금부터 적용한다.

제5조(원인자부담금 경과조치) 종전 조례 제16조의 규정에 따라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한 경우로서 그 납부기한이 「하수도법」 제61조의 개정 규정 시행일(2007. 9. 28) 이전인 부담금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6조(일반적 경과조치)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제천시 하수도 사용 조례」 및 「제천시오수분뇨및축산 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처분, 절차 그밖의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별표 1]

# 배수설비 준공검사 신청서(제12조제1항)

설치자	법인명						
	성명(대표자)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시공자	법인명						
	성명(대표자)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배수설비현황	설치목적	생활오수, 산업폐수, 축산폐수, 기타( ) 배제					
	설치위치	시·군·구 읍·면·동		번지(통반)			
	관종	PVC관, PE관, 흙관, VR관, PC관, 강관, 주철관, 기타					
	관경	Ø mm	연장	m	접속방법	(하수관·맨홀·타배수설비·기타)에 접속	
	배출수량	m'/일		※ 제16조에 의하여 산정된 하수배출량 또는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의하여 허가된 배출시설의 폐수량을 기입함			
준공검사	검사항목			1차 검사	보완사항	2차 검사	비고
				검사일자 ( . . . )			
	1. 배수설비 연결부 적정시공여부 (누수, 지하수침투여부, 공공하수도·타배수설비 훼손여부, 훼손시 적정복구여부)						
	2. 배수설비 경사도(100분의 1이상)						
	3. 배수설비 관경의 적정성						
	4. 배수설비 재질(내구성, 내부식성)						
	5. 오수, 우수 분리배관 여부						
	6. 공공하수도, 타배수설비와의 오접여부						
	7. 기타 상기 신고사항 및 「하수도법」 시행 규칙 별표7의 기준 준수여부						
검사자			성명(서명 또는 인)	성명(서명 또는 인)			
※ 검사자는 검사란에 각 항목에 대한 합격여부를 ○, ×로 표시하고 보완해야 할 사항 및 재검사일자를 명기							

「하수도법」 제27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배수설비 준공검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제천시장 귀하

구비서류 : 배수설비 및 접속부분의 설치시공 전·중·후의 사진 각 1식

수수료

[별표 2]

## 하수도 사용요율표(제14조제2항)

### 1. 하수도 사용업종 구분

- 하수도 사용업종은 제천시의 상수도 사용업종에 준한다.
- 상기 업종에 사용한 물은 상수도, 지하수 및 기타 용수 등에 관계없이 해당 하수도 업종을 적용한다.
- 상기 내용에 명시되지 아니한 업종에 대하여는 해당 유사업종으로 분류 적용한다.

### 2. 하수도 사용료 산정기준

업 종	사 용 요 율	
	사용구분( $m^3$ /월)	$m^3$ 당단가(원)
가 정 용	0~10	130
	11~30	270
	31~50	350
	51 이상	470
일 반 용	0~30	270
	31~50	390
	51~100	510
	101 이상	590
대중탕용	0 이상	270
산업용	0 이상	270

주) 단일시설 내에서 하수가 복합적으로 발생하는 때에는 분리가 가능한 경우를 제외하고 주된 하수가 발생하는 업종으로 구분하며, 주된 하수가 불분명할 경우 하수도 사용 요율이 높은 업종의 요율을 적용함.

[별표 3]

### 하수도사용업종별구분표(제14조제3항)

업종별	구분내용
가정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용 또는 공동용급수전에 의한 가사용 급수</li> <li>○ 담배, 연탄, 양곡, 문방구, 지물, 철물등의 소매업 및 부동산 중개업, 인장업, 행정서사업, 수예점, 만화가게, 수석가게, 구멍가게 등으로서 10m<sup>2</sup>미만의 소규모 가게</li> <li>○ 고아원, 영아원, 양로원, 턱아소 등의 국가·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사회복지수용시설 및 국가유공자단체 사무실</li> </ul>
일반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타업종에 속하지 않는 모든 업종</li> </ul>
대중탕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일반대중 목욕장업</li> </ul>
산업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제조업체</li> </ul>

- 주) 1. 하수도 사용업종은 상수도 업종에 준한다.
2. 상기 업종에 사용한 물은 상수도, 지하수 및 기타 용수 등에 관계없이 해당 하수도업종을 적용한다.
3. 상기 내용에 명시되지 아니한 업종에 대하여는 해당 유사업종으로 분류 적용한다.

## [별표 4]

**수질하수도사용료(제14조제4항)**

## □ 대상항목 : BOD 또는 COD, SS

## □ 사용료 산정기준

- 수질하수도사용료는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의 배출허용기준 농도와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2조제8항의 별도 배출허용기준 농도의 차이에 대하여 산정한다(시행령 제29조제1호).
- BOD 또는 COD 값 중 큰 값을 적용하여야 하며, SS 값은 그대로 적용한다.
- 폐수배출량은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8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측정기기에 의거 산정한다.

## □ 수질하수도사용료

- 수질하수도사용료(원) = 오염부하량[수질초과농도(mg/L)×시간당 폐수배출량( $m^3$ /시간)] ×  $\frac{1}{1000}$ (kg/g) × 1일조업시간(시간/일) × 30일 × kg단가(원/kg)

※ 1일 조업시간은 측정하기 전 배출시설의 최근 조업한 30일간의 조업시간 평균치를 적용한다.

[별표 5]

## 공공하수도 점용료 산정기준(제18조제1항)

(365일 기준)

구 분	산 정 기 준
1. 도로, 철도, 궤도 및 이와 유사한 시설을 위한 점용	점용면적에 대한 인근 유사지의 과세지가 표준액의 100분의 6
2.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시설물의 설치를 위한 점용	점용면적에 대한 인근 유사지의 과세지가 표준액의 100분의 10
3. 택지 또는 상가로 하는 점용	점용면적에 대한 인근 유사지의 과세지가 표준액의 100분의 10
4. 기타 사유로 인한 공공하수도의 점용	점용면적에 대한 인근 유사지의 과세지가 표준액의 100분의 8

[별표 6]

## 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 산정방식(제19조 및 제21조)

### ○ $m^3$ 당 원인자부담금

$$= \frac{\text{공공하수처리시설 총사업비(원)}}{\text{공공하수처리시설 시설용량} (m^3/\text{일})} \times a$$

▷ a =

$$\left( 1 + \frac{\text{공공하수도 설치 준공 이후 연평균 생산자물가 상승률}}{100} \right)^n$$

▷ n : 공공하수도 설치 준공 이후의 경과연수

- ※ 공공하수처리시설 [공공하수처리시설 계획에 포함하여 설치한 차집관거(간선관거)를 포함한다.] 총사업비는 부지매입비, 설계비, 감리비, 시공비 등 총 소요된 금액으로 한다.
- ※ 시내 2이상의 공공하수처리시설이 존재하는 경우 시내 전체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사업비 및 시설용량을 합산하여 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를 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별표 7]

## 분뇨수집·운반 및 처리수수료 산정기준(제23조제1항)

- ※ “수집·운반”은 분뇨의 수집·운반(오수처리시설 및 정화조의 경우 청소를 포함한다)을 말함.
- ※ “처리”는 분뇨처리시설 또는 공공하수처리시설에의 유입 처리 수수료를 말함

### 1. 수거식화장실

부과기준	수 수 료		
	수집·운반	처리	계
20리터	171원	20원	191원

### 2. 오수처리시설 및 정화조

구 분	수 수 료		
	수집·운반	처리	계
기본요금 (1,500리터까지)	16,605원	1,500원	18,105원
초과요금 (100리터마다)	1,070원	100원	1,170원

[별표 8]

증수도 · 하수처리수 재이용수 사용에 따른 하수도사용료 감면기준  
 (제24조 제2항)

구 분	감 면 비 율
업 종	
가 정 용	20%
일 반 용	20%
대 중 탕 용	20%
산 업 용	20%

주) 감면비율은 하수도 사용료를 기준으로 감면하는 금액의 비율을 말함.

예) 하수도 사용료가 100원이고 감면비율이 10%인 경우

하수도 사용료는 90원을 부과하는 것임.

$$- \text{하수도사용료}(100\text{원}) - (\text{하수도사용료 } 100\text{원} \times 10\%) = 90\text{원}$$

### 하수도사용요율 및 하수도사용업종별구분표

현 행			개 정 안																																																																																	
<b>【별표 1】</b> <b>하수도사용요율표</b>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ext-align: center;"> <thead> <tr> <th rowspan="2" style="width: 15%;">구 분</th> <th colspan="3" style="width: 85%;">사 용 요 율</th> </tr> <tr> <th>기본 요금</th> <th>사용구분(m<sup>3</sup>/월)</th> <th>m<sup>3</sup>당단가(원)</th> </tr> </thead> <tbody> <tr> <td rowspan="3" style="vertical-align: middle;">가 정 용</td> <td rowspan="3" style="vertical-align: middle;"><u>1,300</u></td> <td>11~30 이하</td> <td>270</td> </tr> <tr> <td>31~50 이하</td> <td>350</td> </tr> <tr> <td>51 이상</td> <td>470</td> </tr> <tr> <td rowspan="3" style="vertical-align: middle;">업 무 용</td> <td rowspan="3" style="vertical-align: middle;"><u>1,300</u></td> <td>11~30 이하</td> <td><u>270</u></td> </tr> <tr> <td>31~50 이하</td> <td><u>400</u></td> </tr> <tr> <td>51 이상</td> <td><u>510</u></td> </tr> <tr> <td rowspan="5" style="vertical-align: middle;">영 업 용</td> <td rowspan="5" style="vertical-align: middle;"><u>2,600</u></td> <td>11~30 이하</td> <td><u>270</u></td> </tr> <tr> <td>31~50 이하</td> <td><u>310</u></td> </tr> <tr> <td>51~100 이하</td> <td><u>510</u></td> </tr> <tr> <td>101~500 이하</td> <td><u>690</u></td> </tr> <tr> <td>501 이상</td> <td><u>780</u></td> </tr> <tr> <td rowspan="4" style="vertical-align: middle;">욕탕용</td> <td rowspan="4" style="vertical-align: middle;"> <u>1종</u> <hr/> <u>2종</u> </td> <td>1~200 이하</td> <td><u>270</u></td> </tr> <tr> <td>201~300 이하</td> <td><u>350</u></td> </tr> <tr> <td>301~500 이하</td> <td><u>470</u></td> </tr> <tr> <td>501 이상</td> <td><u>590</u></td> </tr> <tr> <td style="vertical-align: middle;">산 업 용</td> <td></td> <td></td> <td style="text-align: right; vertical-align: bottom;">270</td> </tr> </tbody> </table>			구 분	사 용 요 율			기본 요금	사용구분(m <sup>3</sup> /월)	m <sup>3</sup> 당단가(원)	가 정 용	<u>1,300</u>	11~30 이하	270	31~50 이하	350	51 이상	470	업 무 용	<u>1,300</u>	11~30 이하	<u>270</u>	31~50 이하	<u>400</u>	51 이상	<u>510</u>	영 업 용	<u>2,600</u>	11~30 이하	<u>270</u>	31~50 이하	<u>310</u>	51~100 이하	<u>510</u>	101~500 이하	<u>690</u>	501 이상	<u>780</u>	욕탕용	<u>1종</u> <hr/> <u>2종</u>	1~200 이하	<u>270</u>	201~300 이하	<u>350</u>	301~500 이하	<u>470</u>	501 이상	<u>590</u>	산 업 용			270	<b>【별표 2】</b> <b>하수도사용요율표</b>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ext-align: center;"> <thead> <tr> <th rowspan="2" style="width: 15%;">구 분</th> <th colspan="3" style="width: 85%;">사 용 요 율</th> </tr> <tr> <th>사용구분(m<sup>3</sup>/월)</th> <th>m<sup>3</sup>당단가(원)</th> </tr> </thead> <tbody> <tr> <td rowspan="4" style="vertical-align: middle;">가 정 용</td> <td>0~10</td> <td><u>130</u></td> </tr> <tr> <td>11~30</td> <td>270</td> </tr> <tr> <td>31~50</td> <td>350</td> </tr> <tr> <td>51 이상</td> <td>470</td> </tr> <tr> <td rowspan="4" style="vertical-align: middle;">일 반 용</td> <td>0~30</td> <td><u>270</u></td> </tr> <tr> <td>31~50</td> <td><u>390</u></td> </tr> <tr> <td>51~100</td> <td><u>510</u></td> </tr> <tr> <td>101 이상</td> <td><u>590</u></td> </tr> <tr> <td style="vertical-align: middle;">대중탕용</td> <td style="text-align: right; vertical-align: bottom;">0 이상</td> <td style="text-align: right; vertical-align: bottom;"><u>270</u></td> </tr> <tr> <td style="vertical-align: middle;">산 업 용</td> <td style="text-align: right; vertical-align: bottom;">0 이상</td> <td style="text-align: right; vertical-align: bottom;">270</td> </tr> </tbody> </table>			구 분	사 용 요 율			사용구분(m <sup>3</sup> /월)	m <sup>3</sup> 당단가(원)	가 정 용	0~10	<u>130</u>	11~30	270	31~50	350	51 이상	470	일 반 용	0~30	<u>270</u>	31~50	<u>390</u>	51~100	<u>510</u>	101 이상	<u>590</u>	대중탕용	0 이상	<u>270</u>	산 업 용	0 이상	270
구 분	사 용 요 율																																																																																			
	기본 요금	사용구분(m <sup>3</sup> /월)	m <sup>3</sup> 당단가(원)																																																																																	
가 정 용	<u>1,300</u>	11~30 이하	270																																																																																	
		31~50 이하	350																																																																																	
		51 이상	470																																																																																	
업 무 용	<u>1,300</u>	11~30 이하	<u>270</u>																																																																																	
		31~50 이하	<u>400</u>																																																																																	
		51 이상	<u>510</u>																																																																																	
영 업 용	<u>2,600</u>	11~30 이하	<u>270</u>																																																																																	
		31~50 이하	<u>310</u>																																																																																	
		51~100 이하	<u>510</u>																																																																																	
		101~500 이하	<u>690</u>																																																																																	
		501 이상	<u>780</u>																																																																																	
욕탕용	<u>1종</u> <hr/> <u>2종</u>	1~200 이하	<u>270</u>																																																																																	
		201~300 이하	<u>350</u>																																																																																	
		301~500 이하	<u>470</u>																																																																																	
		501 이상	<u>590</u>																																																																																	
산 업 용			270																																																																																	
구 분	사 용 요 율																																																																																			
	사용구분(m <sup>3</sup> /월)	m <sup>3</sup> 당단가(원)																																																																																		
가 정 용	0~10	<u>130</u>																																																																																		
	11~30	270																																																																																		
	31~50	350																																																																																		
	51 이상	470																																																																																		
일 반 용	0~30	<u>270</u>																																																																																		
	31~50	<u>390</u>																																																																																		
	51~100	<u>510</u>																																																																																		
	101 이상	<u>590</u>																																																																																		
대중탕용	0 이상	<u>270</u>																																																																																		
산 업 용	0 이상	270																																																																																		
<p>1. 단일시설내에서 하수가 복합적으로 발생하는 때에는 분리가 가능한 경우를 제외하고 주된 하수가 발생하는 업종으로 구분하되, 주된 하수가 불분명한 경우 하수도사용요율이 높은 업종의 사용요율을 적용함.</p> <p>2. 기본요금은 기본적 행정경비 등을 고려하여 적용함.</p>			<p>1. 단일시설내에서 하수가 복합적으로 발생하는 때에는 분리가 가능한 경우를 제외하고 주된 하수가 발생하는 업종으로 구분하되, 주된 하수가 불분명한 경우 하수도사용요율이 높은 업종의 사용요율을 적용함.</p> <p>2. 삭제</p>																																																																																	

현 행		개 정 안	
【별표 1-1】 하수도사용업종별구분표		【별표 3】 하수도사용업종별구분표	
업 종 별	구 분 내 용	업 종 별	구 分 内 용
가 정 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용 또는 공동급수전에 의하여 가사용으로 급수하는 것</li> <li>· 담배·연탄·양곡·문방구·지물·철물의 소매점등으로서 10제곱미터 미만의 업소</li> <li>· 신문보급소, 신체장애자가 경영하는 점술점 및 지압업소</li> <li>· 도시계획사업 등의 시행으로 인한 철거민 임시 이주단지에 대한 급수</li> </ul>	가 정 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용 또는 공동용급수전에 의한 가사용 급수</li> <li>○ 담배, 연탄, 양곡, 문방구, 지물, 철물등의 소매업 및 부동산 중개업, 인장업, 행정서사업, 수예점, 만화가게, 수식가게, 구멍가게 등으로서 10m<sup>2</sup> 미만의 소규모가게</li> <li>○ 고아원, 영아원, 양로원, 턱아소 등의 국가·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사회복지 수용시설 및 국가유공자단체 사무실</li> </ul>
영 입 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식품점객업, 공연장, 숙박업</li> <li>· 유기장, 오락장, 노래방</li> <li>· 백화점, 도매벤팠, 대규모소매점, 대형점, 시장(상가포함)</li> <li>· 차량판매, 정비업(검사장 포함), 주차장, 세차장, 주유소(석유판매소 제외), 운송 또는 관광업(장고보관업 포함)</li> <li>· 예식장</li> <li>· 학원(도서실 포함, 피아노 개인지도 제외)</li> <li>· 사진현상소</li> <li>· 세육시설업(탁구장업, 세육도장업, 바닥면적 100제곱미터 이상의 험스크린과 연계하여 운영하는 수영장업 제외)</li> <li>· 금융기관(보험, 증권회사, 신용금고 등 포함, 천당포 제외)</li> <li>· 발전소</li> <li>· 이발소(미장원 포함)</li> <li>· 병원</li> <li>· 인쇄소, 출판사(인쇄기계시설이 없는 업소 제외)</li> <li>· 화훼, 식목업</li> <li>· 빌딩(다른 급수업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주택전용이 아닌 지하층을 포함한 4층이상 건물), 오피스텔</li> <li>· 도살장, 정육업</li> <li>· 양조업, 제빵업, 계분업(방앗간 포함), 전기 및 전자제품 제조업, 합성수지 제조업, 페인트류 제조업, 채당업, 청량음료 제조업, 의약품, 화공약품, 화장품제조업, 가구류제조업(자재 가공포함), 연료제조(고압가스제조포함)</li> <li>· 영식업 및 섬유류제조 가공업, 식료품제조가공업, 피혁제조 가공업, 기타 월 평균 200세제곱미터이상 사용하는 제조가공업소</li> <li>· 도금업(도금이 주업인 경우에 한함)</li> <li>· 제제소, 목제소(목공소 제외)</li> <li>· 요업(시멘트 가공제품, 초자제품 포함)</li> <li>· 단기급수를 목적으로 임시 가설한 급수시설에 대한 급수(단, 운반급수의 경우에는 최종단계요율 적용, 도시계획사업 등의 시행으로 인한 철거민 임시 이주단지에 대한 급수 제외)</li> <li>· 건축공사장에 대한 급수(신축 또는 기존 건축물을 멀실후 건축하는 경우에 한함)</li> <li>· 수도관 파손에 의한 누수(단, 최종단계 요율 적용)</li> <li>· 별도 급수전에 의한 선박용 급수</li> </ul>	일 반 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타 업종에 속하지 않는 모든 업종</li> </ul>

현 행		개 정 안	
【별표 1-1】 하수도사용업종별구분표		【별표 1-1】 하수도사용업종별구분표	
업종별	구 분 내 용	업종별	구 分 内 용
업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시설소화전</li> <li>· 시립위탁시설(청소년회관, 체육시설에 한함)</li> <li>· 사회구호단체, 원호단체,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복지시설 중 비영리법인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각종 인허가를 받아 설치운영하는 시설</li> <li>·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직영하는 사업 포함)</li> <li>· 학교</li> <li>· 정당</li> <li>· 농협, 축협, 수협, 산림조합, 한국은행, 정부투자기관, 전용전에 의한 철도용,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비영리수영장, 교회, 사찰, 국공립대학부속병원(국가,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병원 포함)</li> <li>· 병영</li> <li>· 신문사, 방송국</li> <li>· 한국과학기술단지의 연구기관</li> <li>· 급수탑에 의한 급수(단, 공공의 목적으로 급수하는 경우에 한함), 공설소화전</li> <li>· 시장이 지정한 무료공중이용화장실에 대한 급수</li> <li>· 다른 급수업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업소</li> </ul>	일반용	○ 타 업종에 속하지 않는 모든 업종
육당 2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복수목욕장업(허가업소의 업태구분은 허가기준)</li> <li>· 바닥면적 100제곱미터 이상의 헬스클럽과 연계하여 운영하는 수영장에 대한 급수</li> <li>· 가족탕업, 한증탕업(허가업소의 업태구분은 허가기준)</li> <li>· 육조 및 휴게실을 갖춘 암마시술소</li> </ul>	대중탕용	○ 일반 대중목욕장업
육당 1종	· 공동탕에 대한 급수(허가업소의 업태구분은 허가기준)	산업용	○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제조업체
산업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제조업체</li> <li>· 두세 계배업소</li> </ul>	주) 1. 상기업종 중에 사용한 물은 상수도수, 지하수 및 기타수 등에 관계없이 해당 하수도 업종을 적용한다. 2. 영업용중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제조업체는 산업용으로 적용 한다. 3. 상기내용 중 명시되지 아니한 업종에 대하여는 해당 유사업종으로 분류 적용 한다.	

## 하수도 사용요율 조정(안)

현 행				개 정(안)				현 행				개 정(안)				증 감	
업종	기본 요금	단 계	m'당 단가	업종	기본 요금	단 계	m'당 단가	건 수	사용량	금 액 계	건 수	금 액 계	요금	비 율(%)			
6개 업종		4~6단계		4개 업종	없음	4단계		188,864	10,262,390	2,722,057,900	188,864	2,706,287,200	-15,770,700	-0.58%			
가정용	1,300	소계		가정용	소계			129,560	6,960,255	1,401,077,350	129,560	1,379,895,030	-21,182,320	-1.51%			
					0~10	130	32,989	180,927	79,593,710	32,989	47,616,830	-31,976,880	-40.18%				
		11~30	270		11~30	270	72,212	1,375,988	1,105,246,850	72,212	1,105,221,850	-25,000	0.00%				
		31~50	350		31~50	350	16,933	641,600	118,354,050	16,933	118,572,890	218,840	0.18%				
		51~	470		51~	470	7,426	4,761,740	97,882,740	7,426	108,483,460	10,600,720	10.83%				
		소계			소계			21,122	917,059	373,530,050	21,122	425,051,660	51,521,610	13.79%			
업무용	1,300				0~30	270	16,533	163,701	37,672,820	16,533	44,295,050	6,622,230	17.58%				
		11~30	270		31~50	390	2,318	89,067	23,013,570	2,318	25,642,520	2,628,950	11.42%				
		31~50	400		51~100	510	1,256	84,998	29,649,890	1,256	31,047,570	1,397,680	4.71%				
		51~	510		101~	590	1,015	579,293	283,193,770	1,015	324,066,520	40,872,750	14.43%				
		소계			소계			37,394	1,690,617	753,496,530	37,394	705,202,980	-48,293,550	-6.41%			
					0~30	270	22,582	251,856	86,995,640	22,582	68,067,000	-18,928,640	-21.76%				
영업용	2,600	11~30	270		31~50	390	6,027	237,216	65,511,220	6,027	70,645,180	5,133,960	7.84%				
		31~50	310		51~100	510	5,106	354,990	123,167,390	5,106	132,076,770	8,909,380	7.23%				
		51~100	510		101~	590	3,679	846,555	477,822,280	3,679	434,414,030	-43,408,250	-9.08%				
		101~500	690		0	0	0	0	0	0	0	0	0.00%				
		501~	780		0	0	0	0	0	0	0	0	0.00%				
		소계			33	28,742	14,210,380	33	16,393,940	2,183,560	15.37%						
욕탕2종		1~200	270		0~30	270	1	2	540	1	540	0	0.00%				
		201~300	350		31~50	390	0	0	0	0	0	0	0.00%				
		301~500	470		51~100	510	0	0	0	0	0	0	0.00%				
		501~	590		101~	590	32	28,740	14,209,840	32	16,393,400	2,183,560	15.37%				
		소계			소계			567	563,384	152,113,680	567	152,113,680	0	0.00%			
					0~	270	0	0	0	0	152,113,680	152,113,680	100.00%				
욕탕1종		1~200	270			188	10,791	2,913,570	188	0	-2,913,570	-100.00%					
		201~300	350			27	6,524	1,761,480	27	0	-1,761,480	-100.00%					
		301~500	470			44	16,836	4,545,720	44	0	-4,545,720	-100.00%					
		501~	590			308	529,233	142,892,910	308	0	-142,892,910	-100.00%					
		소계			소계			188	102,333	27,629,910	188	27,629,910	0	0.00%			
산업용		1~	270	산업용	1~	270	188	102,333	27,629,910	188	27,629,910	0	0.00%				

## 관계 법령

### □ 하수도법(일부개정 2007.4.11 법률 제8371호)

**제15조(사용의 공고 등)** 공공하수도관리청은 공공하수도의 사용을 개시하고자 할 때에는 그 사용개시 시기, 배수구역(공공하수처리시설의 경우에는 그 하수처리구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 합류식하수관거 및 분류식하수관거의 현황 그 밖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공고하고, 관계 도면을 일반에게 공람시켜야 한다.

**제16조(공공하수도관리청이 아닌자의 공사시행 등)**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아닌자는 공공하수도관리청의 허가를 받아 공공하수도에 관한 공사 또는 유지를 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유지는 허가 없이 이를 할 수 있다.  
②공공하수도관리청은 제1항 본문의 규정에 따라 허가를 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제24조(점용허가)** 공공하수도에 영향을 미치는 시설 또는 공작물을 설치하거나 물건을 쌓아두는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점용행위를 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공공하수도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26조(중수도의 설치)** ①물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물을 신축(증축·개축 또는 재축되는 부분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고자 하는 자는 단독 또는 공동으로 사용수량의 100분의 10 이상을 재이용할 수 있는 중수도를 설치·운영하여야 하며,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중수도의 설치결과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공공하수도관리청으로부터 재이용수를 사용수량의 100분의 10 이상 공급받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의 규정에 따른 숙박업 또는 목욕장업에 사용되는 시설로서 건축 연면적이 6만제곱미터 이상인 시설물

2.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규정에 따른 공장으로서 1일 폐수배출량이 1천500세제곱미터 이상인 시설물

3.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종류 및 규모 이상인 시설물

②중수도의 시설기준 및 관리에 관한 사항과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의 규정에 따른 사용수량의 기준, 동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따른 건축 연면적, 폐수 배출량의 산정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③국가는 중수도의 설치비용을 지원할 수 있으며, 지방자치단체는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중수도를 설치한 시설물의 소유자 등에 대하여 수도요금 또는 하수도 사용료를 경감할 수 있다.

④환경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시설물을 신축하는 자가 중수도를 설치·운영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이행을 명할 수 있다.

**제27조(배수설비의 설치 등)** ①공공하수도의 사용이 개시된 때에는 배수구역 안의 토지의 소유자·관리자(그 토지 위에 시설물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설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를 말한다) 또는 국·공유시설물의 관리자는 그 배수구역의 하수를 공공하수도에 유입시켜야 하며, 이에 필요한 배수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공공하수도관리청은 배수설비의 부실시공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배수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자에게 그 배수설비의 시공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로 하여금 대행하게 하도록 명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옥내의 배수설비 공사

2. 배수설비의 준설·보수 등 공공하수도의 기능에 장애를 주지 아니하는 배수설비의 유지·관리 공사

③제1항의 규정에 따라 배수설비를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배수설비의 종류·규모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공공하수도관리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따라 배수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질 또는 수량 이상의 하수를 공공하수도에 유입시키고자 하는 자는 당해 하수의 수질 또는 수량, 배수설비의 사용개시 예정일자 등에 관한 사항을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배수설비의 설치 신고를 하는 때에 함께 신고를 하여야 한다. 신고한 하수의 수질 또는 수량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⑤제1항의 규정에 따른 배수설비의 설치의무자가 그 설치공사를 완료한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공하수도관리청의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⑥제1항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배수설비의 유지·관리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설치자가 하여야 한다. 다만, 그 토지의 경계로부터 공공하수도까지의 배수설비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공하수도관리청이 유지·관리할 수 있다.

⑦배수설비의 설치 및 구조에 관하여는 「건축법」 그 밖의 다른 법령의 규정에 따르는 것을 제외하고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야 한다.

**제41조(분뇨처리 의무)**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 구역 안에서 발생하는 분뇨를 수집·운반 및 처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제45조의 규정에 따른 분뇨수집·운반업자로 하여금 그 수집·운반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오지·벽지 등 분뇨의 수집·운반 및 처리가 어려운 지역에 대하여 환경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는 지역을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

③ 화장실이 설치되어 있는 차량·선박 또는 항공기를 운행하는 자 및 이동식 화장실을 설치·관리하는 자는 그 화장실에서 배출되는 분뇨(수세식 화장실에서 발생하는 오수를 포함한다)를 스스로 수집·운반 및 처리하여야 하며, 스스로 수집·운반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45조의 규정에 따른 분뇨수집·운반업자로 하여금 그 수집·운반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④ 시장·군수·구청장은 분뇨를 수집·운반 및 처리함에 있어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다만, 시·도지사가 분뇨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는 경우에는 시·도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시·도지사가 그 분뇨처리에 따른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으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제45조의 규정에 따른 분뇨수집·운반업자가 수집·운반을 대행하는 경우에는 대행자가 그 수집·운반에 따른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⑤ 분뇨처리시설을 설치하여 운영하는 공공하수도관리청은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수집·운반된 분뇨에 대하여 분뇨처리시설의 운영중단 등 환경부령이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처리를 거부하여야서는 아니 된다.

**제61조(원인자부담금 등)** ① 공공하수도관리청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양 이상의 하수를 공공하수도로 유출시킬 수 있는 건축물 등의 소유자(건축 또는 건설 중인 경우에는 건축주 또는 건설주체를 말한다)에게 공공하수도 개축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시킬 수 있다.

② 공공하수도관리청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타공사 또는 공공하수도에 영향을 미치는 공사 외의 행위(이하 “타행위”라 한다)로 인하여 필요하게 된 공공하수도에 관한 공사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타공사 또는 타행위의 비용을 부담하여야 할 자에게 부담시키거나 필요한 공사를 시행하게 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의 산정기준·징수방법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제65조(사용료 등)** ① 공공하수도관리청은 공공하수도를 점용 또는 사용하는 자로부터 점용료 또는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점용료 또는 사용료의 징수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수입금은 공공하수도에 관한 용도 외에는 이를 사용할 수 없다.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사용료는 제15조의 규정에 따른 사용개시의 공고를 한 후 가 아니면 이를 징수할 수 없다.

**제73조(강제징수)** 공공하수도관리청은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 또는 조례의 규정에 따른 사용료·점용료 그 밖의 부담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자가 있을 때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할 수 있다.

#### □ 하수도법 시행령(전부개정 2007.9.27 대통령령 제20289호)

**제24조(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 ① 법 제34조제2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개인하수처리시설의 규모 또는 처리용량
2. 개인하수처리시설의 구조
3. 개인하수처리시설 본체의 교체

② 법 제34조제3항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기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 1. 하수처리구역 밖

가. 1일 오수 발생량이 2세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건물·시설 등(이하 “건물등”이라 한다)을 설치하려는 자는 오수처리시설(개인하수처리시설로서 건물등에서 발생하는 오수를 처리하기 위한 시설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설치할 것

나. 1일 오수 발생량 2세제곱미터 이하인 건물등을 설치하려는 자는 정화조(개인하수처리시설로서 건물등에 설치한 수세식 변기에서 발생하는 오수를 처리하기 위한 시설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설치할 것

##### 2. 하수처리구역 안

수세식 변기를 설치하려는 자는 정화조를 설치할 것

③ 제2항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기준에 관한 세부내용은 별표 1과 같다.

④ 제2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환경정책기본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특별대책지역 또는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낙동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 「금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 및 「영산강·섬진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수변구역에서 수세식 변기를 설치하거나 1일 오수발생량이 1세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건물등을 설치하려는 자는 오수처리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⑤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기준에 관한 오수발생량 산정기준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 하수도법 시행규칙(일부개정 2007.10.24 환경부령 제251호)

**제7조 (하수처리구역의 지정기준)** 공공하수도관리청은 법 제15조에 따른 하수처리구역을 하수관거로부터 직선거리 300미터 이내의 범위에서 정하되, 하수처리구역의 지정범위에 관한 세부 기준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

**제23조 (배수설비의 설치기준 및 구조기준 등)** ① 법 제27조제7항에 따른 배수설비의 설치 및 구조에 관한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배수설비는 공공하수도 또는 다른 배수설비에 연결되도록 설치할 것. 다만, 가설건축물 등에서 발생하는 하수를 공공하수도관리청의 허가를 받아 법 제45조에 따른 분뇨수집·운반업자가 운반하여 공공하수처리시설에서 처리하는 경우에는 배수설비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배수설비는 철근콘크리트, 경질염화비닐, 도기, 그 밖에 내구성과 내부식성(耐腐蝕性)이 있는 자재를 사용하고 수밀구조(水密構造)로 할 것
3. 분류식 하수도에 연결하는 배수설비는 오수(汚水)와 우수(雨水)가 분리되어 흐를 수 있는 구조로 할 것
4. 배수설비를 공공하수도에 연결시킬 때에는 오수관과 우수관을 잘못 연결하는 등 공공하수도의 기능을 방해하거나 손상하지 아니하도록 할 것

② 배수설비는 제1항의 기준 외에 별표 7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③ 제1항제1호 단서에 따라 가설건축물 등에서 발생하는 하수를 법 제45조에 따른 분뇨수집·운반업자를 통하여 공공하수처리시설에서 처리하려는 자는 별지 제8호 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공공하수도관리청에 제출(「전자정부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여야 한다.

1. 하수를 배출하는 건축물 등의 위치도

## 2. 하수를 공공하수처리시설로 수집·운반하는 계획

④ 공공하수도관리청은 제3항에 따른 신청을 받고 허가할 때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 허가증을 신청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제37조(분뇨수집 등의 의무제외 지역)** 법 제41조제2항에 따라 시·군·구의 조례로 분뇨의 수집·운반 및 처리가 어려운 지역으로 정할 수 있는 지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으로 한다. 다만, 국립공원 등 많은 사람이 모이는 관광지로서 청결을 유지할 필요가 있는 지역은 제외한다.

1. 오지나 벽지 등에 위치한 마을로서 가구 수가 50호 미만인 지역
2. 차량 출입이 어려워 분뇨의 수집·운반이 어려운 지역

## □ 지하수법(일부개정 2007.5.17 법률 제8466호)

**제7조 (지하수개발·이용의 허가)** ① 지하수를 개발·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시장·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자연히 흘러나오는 지하수 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한 허가·인가 등을 받거나 신고를 하고 시행하는 사업 등으로 인하여 부수적으로 발생하는 지하수를 이용하는 경우
2. 동력장치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가정용 우물 또는 공동우물을 개발·이용하는 경우
3. 제13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은 경우
4. 삭제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지하수영향조사기관이 실시하는 지하수영향조사를 받은 후 지하수영향조사기관이 작성한 지하수영향조사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시장·군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하수영향조사서를 심사하여 그 결과를 허가내용에 반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군수는 기본계획 및 지역관리계획을 고려하여 심사하여야 한다.

③ 시장·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하지 아니하거나 취수량을 제한할 수 있다.

1. 지하수의 채취로 인하여 인근지역의 수원의 고갈 또는 지반의 침하를 가져올 우려가 있거나 주변시설물의 안전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2. 지하수를 오염시키거나 자연생태계를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지하수의 적정관리 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관

리계획 그 밖에 공공사업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

4. 기타 지하수의 보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④ 시장·군수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그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⑤ 시장·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함에 있어서 특히 지하수의 보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준공검사를 받을 것을 조건으로 할 수 있다.

⑥ 제1항 내지 제5항의 규정은 허가받은 사항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다만, 허가받은 사항의 변경으로 인하여 해당 지하수개발·이용이 제8조제1항제2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에는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군수에게 신고하고 지하수를 계속 이용할 수 있다.

⑦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하수영향조사의 항목·조사방법·평가기준, 지하수영향조사서의 작성지침·작성내용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조 (지하수개발·이용의 신고)**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7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시장·군수에게 신고하고 지하수를 개발·이용할 수 있다.

1.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국방·군사시설사업에 의하여 설치된 시설에서 지하수를 개발·이용하는 경우

2. 「농업·농촌기본법」 제3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농업 및 「농어촌발전 특별조치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어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 이하로 지하수를 개발·이용하는 경우

3. 재해 기타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긴급히 지하수를 개발·이용할 필요가 있다고 시장·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4. 전시 기타 비상사태의 발생에 대비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비상급수용으로 지하수를 개발·이용하는 경우

5. 제1호 내지 제4호외의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 이하로 지하수를 개발·이용하는 경우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사항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시장·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한 사항의 변경으로 인하여 해당 지하수개발·이용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③시장·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하수개발·이용이 제7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지하수영향조사기관이 실시한 지하수영향조사를 받아 그 결과를 토대로 취수량 및 취수기간을 제한할 수 있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정명령 또는 이용중지·공동이용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없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당해 개발·이용시설의 폐쇄를 명할 수 있다.

#### □ 건축법(일부개정 2007.10.17 법률 제8662호)

**제18조 (건축물의 사용승인)** ①건축주는 제8조·제9조 또는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았거나 신고를 한 건축물의 건축공사를 완료(하나의 대지에 2이상의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동별공사를 완료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후 그 건축물을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2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감리자가 작성한 감리완료보고서(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사감리자를 지정한 경우에 한한다) 및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공사완료도서를 첨부하여 허가권자에게 사용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허가권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승인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기간내에 사용승인을 위한 검사를 실시하고, 검사에 합격된 건축물에 대하여는 사용승인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은 사용승인을 위한 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하고 사용승인서를 교부할 수 있다.

1. 사용승인을 신청한 건축물이 이 법에 따라 허가 또는 신고한 설계도서대로 시공되었는지의 여부
2. 감리완료보고서, 공사완료도서 등의 서류 및 도서가 적합하게 작성되었는지의 여부

#### □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일부개정 2007.5.17 법률 제8466호)

**제32조 (배출허용기준)** ①폐수배출시설(이하 "배출시설"이라 한다)에서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의 배출허용기준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②환경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환경부령을 정하는 때에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시·도는 「환경정책기본법」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지역환경기준의 유지가

골란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조례로 제1항의 기준보다 엄격한 배출허용기준을 정할 수 있다. 다만, 제7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33조·제37조·제39조 및 제41조 내지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환경부장관의 권한이 시·도지사에게 위임된 경우에 한 한다. <개정 2007.5.17>

④ 시·도지사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배출허용기준이 설정·변경된 때에는 이를 자체 없이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고 이해관계자가 알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환경부장관은 특별대책지역 안의 수질오염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당해 지역 안에 설치된 배출시설에 대하여 제1항의 기준보다 엄격한 배출허용기준을 정할 수 있고, 당해 지역 안에 새로이 설치되는 배출시설에 대하여 특별배출허용기준을 정할 수 있다.

⑥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례에 의한 배출허용기준이 적용되는 시·도 안에 당해 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지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지역 안에 설치되었거나 설치되는 배출시설에 대하여도 조례에 의한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한다.

⑦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배출시설에 대하여는 제1항 내지 제6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7.5.17>

1. 제33조제1항 단서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설치되는 폐수무방류배출시설
2. 환경부령이 정하는 배출시설 중 폐수를 전량 재이용하거나 전량 위탁처리하여 공공수역으로 폐수를 방류하지 아니하는 배출시설

⑧ 환경부장관은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폐수종말처리시설 또는 「하수도법」 제2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한 하수종말처리시설에 배수설비를 통하여 폐수를 전량 유입하는 배출시설에 대하여는 그 폐수종말처리시설 또는 하수종말처리시설에서 적정하게 처리할 수 있는 항목에 한하여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별도의 배출허용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제33조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및 신고)** ① 배출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거나 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받은 사항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그 외의 사항 중 환경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 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변경한 때에는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7.5.17>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한 자가 신고한 사항 중 환경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 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변경한 때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7.5.17>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변경허가를 받고자 하거나 신고·변경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가 제35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와 제3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공동방지시설을 설치 또는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⑤ 환경부장관은 상수원보호구역의 상류지역, 특별대체지역 및 그 상류지역, 취수시설이 있는 지역 및 그 상류지역의 배출시설로부터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로 인하여 환경기준의 유지가 곤란하거나 주민의 건강·재산, 동·식물의 생육에 중대한 위해를 가져올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할시·도지사의 의견을 듣고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배출시설의 설치(변경을 포함한다)를 제한할 수 있다.

⑥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배출시설의 설치를 제한할 수 있는 지역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환경부장관은 지역별 제한대상 시설을 고시하여야 한다.

⑦ 제5항 및 제6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환경부령이 정하는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배출하는 배출시설로서 배출시설의 설치제한지역에서 폐수무방류배출시설로 하여 이를 설치할 수 있다.

⑧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배출시설의 설치제한지역에서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지역 및 시설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⑨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7.5.17>

1.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을 제32조에 따른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처리할 수 있을 것
2. 다른 법령에 따른 배출시설의 설치제한에 관한 규정에 위반되지 아니할 것
3.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폐수가 공공수역으로 유출·누출되지 아니하도록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 전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설치할 것

**제38조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운영)** ① 사업자(제33조제1항 단서 또는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은 사업자

를 제외한다) 또는 방지시설을 운영하는 자(제35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공동방지 시설 운영기구의 대표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을 방지시설에 유입하지 아니하고 배출하거나 방지시설에 유입하지 아니하고 배출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는 행위
2. 방지시설에 유입되는 수질오염물질을 최종 방류구를 거치지 아니하고 배출하거나, 최종 방류구를 거치지 아니하고 배출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는 행위
3.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에 공정 중에서 배출되지 아니하는 물 또는 공정 중에서 배출되는 오염되지 아니한 물을 섞어 처리하거나, 배출허용기준이 초과되는 수질오염물질이 방지시설의 최종 방류구를 통과하기 전에 오염도를 낮추기 위하여 물을 섞어 배출하는 행위. 다만, 환경부장관이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회석하여야만 수질오염물질의 처리가 가능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그 밖에 환경부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4. 그 밖에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을 정당한 사유 없이 정상적으로 가동하지 아니하여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수질오염물을 배출하는 행위

②제33조제1항 단서 또는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의 설치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은 사업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폐수무방류배출시설에서 나오는 폐수를 사업장 밖으로 반출 또는 공공수역으로 배출하거나 배출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는 행위
2. 폐수무방류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폐수를 오수 또는 다른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폐수와 혼합하여 처리하거나 처리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는 행위
3. 폐수무방류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폐수를 재이용하는 경우 동일한 폐수무방류 배출시설에서 재이용하지 아니하고 다른 배출시설에서 재이용하거나 화장실 용수·조경용수 또는 소방용수 등으로 사용 하는 행위

③사업자 또는 방지시설을 운영하는 자는 조업을 할 때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운영에 관한 상황을 사실대로 기록하여 이를 보존하여야 한다.

④삭제 <2007.5.17>

**제38조의2 (측정기기의 부착 등)**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이 제32조에 따른 배출허용기준, 제12조제3항 또는 「하수도

법」 제7조에 따른 방류수 수질기준에 맞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적산전력계·적산유량계·

수질오염물질 배출농도 측정기기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기(이하 "측정기기"라 한다)를 부착하여야 한다.

1. 대통령령이 정하는 폐수배출량 이상의 사업장을 운영하는 사업자. 다만, 제33조 제1항 단서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은 사업자를 제외한다.
2. 대통령령이 정하는 처리용량 이상의 방지시설(공동방지시설을 포함한다)을 운영하는 자
3. 대통령령이 정하는 처리용량 이상의 제48조제1항에 따른 폐수종말처리시설 또는 「하수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이하 "공공하수처리시설"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자

②제1항에 따라 부착하여야 하는 측정기기의 부착방법, 부착시기 및 그 밖에 측정기기의 부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본조신설 2007.5.17]

#### □ 지방세법(일부개정 2007.8.3 법률 제8621호)

**제73조 (이의신청)** ①이의신청을 하고자 할 때에는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불복의 사유를 구비하여 도세(도세중 공동시설세 및 시·군세에 부가하여 징수하는 지방교육세와 특별시세·광역시세중 도시계획세·공동시설세 및 구세(군세를 포함한다)에 부가하여 징수하는 지방교육세를 제외한다)에 있어서는 도지사에게, 시·군세(도세중 공동시설세 및 시·군세에 부가하여 징수하는 지방교육세와 특별시세·광역시세중 도시계획세·공동시설세 및 구세(군세를 포함한다)에 부가하여 징수하는 지방교육세를 포함한다)에 있어서는 시장·군수에게 이의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1998.12.31, 2000.12.29>

②삭제 <2005.12.31>[본조신설 1997.8.30]

**제75조 (청구기한의 연장등)** ①이의신청인 또는 심사청구인이 제26조의2에 규정하는 사유(신고·신청·청구 기타 서류의 제출·통지에 관한 기한연장사유에 한한다)로 인하여 이의신청 또는 심사청구기간내에 이의신청 또는 심사청구를 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사유가 소멸한 날부터 14일이내에 이의신청 또는 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신청인 또는 청구인은 그 기간내에 이의신청 또는 심사청구를 할

수 없었던 사유, 그 사유가 발생한 날 및 소멸한 날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문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73조제1항 및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기한내에 우편으로 제출(「우편법」에 의한 통신일부인이 찍힌 날을 기준으로 한다)한 이의신청서 및 심사청구서가 신청기간을 경과하여 도달한 경우에는 그 기간만료일에 적법한 신청 또는 청구가 있었던 것으로 본다. <개정 2005.12.31>

③ 제73조·제74조 및 제80조의 기간은 불변기간으로 한다. <개정 2001.12.29>[본조 신설 1997.8.30]

**제76조 (보정요구)** ① 제73조·제74조 및 제7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신청 또는 심사청구가 있는 경우에 그 신청 또는 청구의 서식 또는 절차에 결함이 있는 경우와 불복사유를 입증할 증빙의 미비로 심의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20일 간의 보정기간을 정하여 문서로써 그 결함의 보정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보정할 사항이 경미한 경우에는 직권으로 이를 보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정기간은 제77조에 규정하는 결정기간에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본조신설 1997.8.30]

**제77조 (결정등)** ① 제73조 및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 또는 심사청구를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행정자치부장관은 그 신청·청구를 받은 날부터 90일이내에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결정을 하고 신청인 또는 청구인에게 이유를 함께 기재한 결정서를 송달하여야 한다. <개정 1998.12.31, 2005.1.5>

1. 신청·청구기간이 경과하였거나 보정기간내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한 때는 그 신청·청구를 각하하는 결정
2. 이의신청 또는 심사청구가 이유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신청·청구를 기각하는 결정
3. 이의신청 또는 심사청구가 이유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신청·청구의 목적이 된 처분의 취소·경정 또는 필요한 처분의 결정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은 당해 처분청을 기속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이 있은 때에는 당해 처분청은 결정의 취지에 따라 즉시 필요한 처분을 하여야 한다.

④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조직과 운영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본조 신설 1997.8.30]

**제78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이 법에 의한 이의신청 또는 심사청구의 목적이 되는 처분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행정심판법」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동법 제11조·제12조·제16조·제20조 및 제26조의 규정은 이의신청 또는 심사청구에 대하여 이를 준용하되, 이 경우 "위원회"는 "지방세심의위원회"로 본다. <개정 2002.12.30, 2005.12.31>

②삭제 <2001.12.29>[본조신설 1997.8.30]

**제79조 (청구의 효력등)** ①이의신청 또는 심사청구는 그 처분의 집행에 효력이 미치지 아니한다. 다만, 압류한 재산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공매처분을 보류할 수 있다.

②이의신청 또는 심사청구에 관한 심의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본조신설 1997.8.30]

## 입법예고



제천시

시보

시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선	기판의장
감	

제884호 2007. 10. 18. [금]

### 【입법예고】

- 제천시공고 제2007-1350호 [제천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에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2
- 제천시공고 제2007-1355호 [제천시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7
- 제천시공고 제2007-1357호 [제천시 하수도 사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18

### 【고시】

- 제천시고시 제2007-87호 [주택건설사업계획2차변경승인 고시] — 38

### 【공고】

- 제천시공고 제2007-1336호 [미술장식품설치심의승인 공고] — 40
- 제천시공고 제2007-1342호 [도로지정 공고] — 41
- 제천시공고 제2007-1345호 [유기동물소유자확인 및 환부 공고] — 42
- 제천시공고 제2007-1347호 [도로점용허가에관한 공고] — 43
- 제천시공고 제2007-1353호 [도로지정 공고] — 44
- 제천시공고 제2007-1361호 [도로지정 공고] — 45



발행: 제천시 편집: 혁신통보팀 (☎641-5513, ☎390-701) 충북 제천시 시청길 15(천남동12-2)  
제천시보는 매주 금요일에 발행되며, 원고마감은 매주 수요일까지입니다.

2007. 10. 20.(월)

기밀하기 ←→

제작자 : 관리자 | 편집자 : 관리자 | 접속자 : 0 | 최근수정 : 2007-10-19 10:54:20

행정정보  
제작자와는 210 일정제작자는 맞습니다.

**※ 입법예고**

제천시 입법예고 모니터입니다.  
제천시 지방정부에서 처리 또는 개정하는 조례, 규칙 등 입법예고 사항을 안내합니다.

No. 324

제작자 : 관리자 | 작성일 : 2007-10-19 | 조회 : 21

제작자 : 제천시 하수도 사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첨부파일 : 첨부파일 1(제천시 하수도 사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pdf) 500 쪽으로

제천시 공고 제 2007 - 1357 호

제천시 하수도 사용 조례 전부 개정함에 있어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내용과 차이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 10. 19.  
제천시장

**제천시 하수도 사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조례명 : 제천시 하수도 사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 「하수도법」 및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의 오수·분뇨에 관한 규정이 「하수도법」으로 통합되어 '06. 9. 27일 전부 개정증포되어, '07. 9. 28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하수도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 하수도법령 통합에 따른 표준 하수도조례안이 환경부로부터 시달되어 「제천시 하수도사용조례」와 「제천시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를 통합한 조례개정

**3. 주요내용**

- 하수처리구역 지정기준(안 제2조) : 궁공하수관거로부터 50m이내로 정함
- 중수도의 설치 및 관리(안 제7조 내지 제10조)
- 궁공하수도사용료 부과기준(안 제14조 내지 제16조)
- 하수도사용료(안 제14조, 별표 2 및 별표 3)
- 개별건축물등에 대한 원인자부담금(안 제19조) : 환경부장관이 고시한 오수발생량 산정기준 적용
- 분수 수질수반 수수료 등의 부과기준(안 제22조 및 제23조)
- 궁공하수도 사용료 등 감면(안 제24조)
  -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의 규정에 의한 재난상태 선제지역 또는 특별재난지역의 대상자
  - 중수도를 설치하는 경우 사용량에 해당하는 업종별 요금의 20%

**4. 의견서 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07년 11월 8일까지 제천시장(충주 환경사업소장)에게 의견을 제출하거나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연락처 641-4166 FAX 641-4169 담당자 : 김종문(km2589@hanmail.net)

○ 예고 사항에 대한 칭족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주소

○ 기타 참고 사항 등

[ ] 확장

문서번호 : 2007-10-19-000324 | 관리자 : 관리자 | 편집자 : 관리자 | 접속자 : 0 | 최근수정 : 2007-10-19 10:54:20

제작자와는 210 일정제작자는 맞습니다.

모사능글 | 개인정보보호정책 | 저작권보호정책 | 글꼴이자외관결속 | 쿠키프로그램  
(주)S&T 701 충북 제천시 환경 10(천남동)  
Tel 043-645-7101 FAX 043-645-0970  
Copyright(C) 2005.제천시 All right reserved. ID:

문서번호 : 2007-10-19-000324 | 관리자 : 관리자 | 편집자 : 관리자 | 접속자 : 0 | 최근수정 : 2007-10-19 10:54:20

제작자와는 210 일정제작자는 맞습니다.

모사능글 | 개인정보보호정책 | 저작권보호정책 | 글꼴이자외관결속 | 쿠키프로그램  
(주)S&T 701 충북 제천시 환경 10(천남동)  
Tel 043-645-7101 FAX 043-645-0970  
Copyright(C) 2005.제천시 All right reserved. ID:

## 표준 하수도조례안

잘사는 충북 행복한 도민



충청북도

BIG  
경계특별법도 충북

수신자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하수도사용조례 및 건축물용도별 산정방법 개정고시 관련 회의개최

1. 환경부 생활하수과-2929(2007.10.9)호와 관련입니다.  
2. 하수도법 시행과 관련하여 하수도사용조례등 관련규정의 개정·수정을 위한 설명회 및 토론회를 아래와 같이 개최한다하니 업무담당자가 참여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일 시 : 2007.10.15(월) 13:30 ~ 18:00

나. 장 소 : 대전상공회의소 대강당

다. 회의안건

1) 하수도사용조례기준 수정안

2) 건축물 용도별 오수발생량 산정방법 개정고시안

3. 아울러 회의안건에 대한 의견을 한국상하수도협회 홈페이지(kwwa.or.kr)에서 수령한다하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참석자 명단(소속,부서,직급,성명)을 한국상하수도 협회(전화 3156-7753, 메일 cshivy@kwwa.or.kr, 팩스 3156-7778)로 2007.10.11일까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가. 하수도사용조례기준 수정안 대비표 1부.

나. 건축물 용도별 오수발생량 산정기준 고시개선방안 1부.

다. 건축물 용도별 오수발생량 산정기준 조정안 1부.

라. 건축물 용도별 오수발생량 산정기준 고시 대비표. 1부.

마. 관련회의 개최계획 1부. 끝.

### 충 청 북 도 지 사

수신자 청주시장(환경과장), 청주시장(수질관리과장), 충주시장(물정책과장), 충주시장(하수시설과장), 충주시장(하수처리과장), 제천시환경사업소장, 청원군수(환경과장), 청원군수(상하수도사업소장), 보은군수(환경산림과장), 보은군수(상하수도사업소장), 익천군수(환경위생과장), 익천군수(환경위생과장), 영동군수(환경위생과장), 영동군수(상하수도사업소장), 증평군수(환경위생과장), 증평군수(증평군상하수도사업소장), 진천군수(환경과장), 진천군수(환경위생과장), 진천군수(환경위생과장), 괴산군수(상하수도사업소장), 음성군수(환경보호과장), 음성군수(상하수도사업소장), 단양군수(환경위생과장), 단양군수(상하수도사업소장)

★지방환경주사보 박종우 수질관리과장 10/10  
오인근

협조자 지방시설주사 이상득 지방시설사무관 김동원

시행 수질관리과-10239 ( 2007.10.10. ) 접수 제천시환경사업소-14522 ( 2007.10.11. )

우 360-765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로 158(상당구 문화동 89) / <http://www.cb21.net>

전화 043) 220-4843 /전송 043) 220-4819 / [envinet@cb21.net](mailto:envinet@cb21.net) / 공개

## 하수도 조례 기준 수정안(법령 시행 후)

현 행	개정안	수정안(하수도법·령·규칙 공포후)	비고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군)(이하 "시(군)"이라 한다)의 하수도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하여 하수도법(이하 "법"이라 한다)과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동법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군)(이하 "시(군)"이라 한다)의 하수도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하여 하수도법(이하 "법"이라 한다)과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동법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개정안과 같음〉	
〈신설〉	제2조(하수처리구역 지정기준) 법 제15조 및 <u>규칙안 제8조</u> 의 규정에 따라 하수처리구역을 지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공공하수도(하수관거를 말한다)로부터 00m 이내로 하여야 한다.	제2조(하수처리구역 지정기준) 법 제15조 및 <u>규칙 제7조</u> 의 규정에 따라 하수처리구역을 지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공공하수도(하수관거를 말한다)로부터 00m 이내로 하여야 한다.	- 조항 정리
제6조(공공하수도 설치 및 관리의 범위) 법 제18조 및 <u>규칙 제3조제1항제2호</u> 의 규정에 의한 특별시장·광역시장과 구청장의 공공하수도의 설치 및 관리 범위는 다음과 같다.	제3조(공공하수도 설치 및 관리의 범위) 법 제18조 및 <u>규칙안 제10조제1항제2호</u> 의 규정에 의한 특별시장·광역시장과 구청장의 공공하수도의 설치 및 관리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제3조(공공하수도 설치 및 관리의 범위) 법 제18조 및 <u>규칙 제9조제1항제2호</u> 의 규정에 의한 "공공하수도 중 하수관거나 그 밖의 공공하수도의 관리 범위는 다음과 같다.	- 조항 정리

<p>1. 특별시장·광역시장 : <u>하수종</u> <u>말처리시설</u>, 차집관거상의 중계 펌프장, 차집관거의 설치·개축·수 선 및 유지관리와 차집관거의 준설</p> <p>2. 구청장 : 차집관거를 제외한 하수관거 및 중계펌프장·빗물펌 프장 등 기타 공작물의 설치·개 축·확장·수선 및 유지관리</p>	<p>1. 특별시장·광역시장 : <u>공공하</u> <u>수처리시설</u>, 분뇨처리시설 및 조례시행규칙으로 정하는 <u>하</u> <u>수관거와 공작물·시설물</u></p> <p>2. 구청장 : <u>특별시장·광역시장이</u> <u>설치·관리하는 범위 이외의 공</u> <u>공하수도시설</u></p>	<p>1. 특별시장·광역시장 : <u>분뇨처</u> <u>리시설 및 조례시행규칙으로</u> <u>정하는 하수관거와 공작물·시설</u> <u>물 등의 공공하수도</u></p> <p>2. 구청장 : 특별시장·광역시장이 관리하는 범위 이외의 공공하 수도</p>	<p>- 특·광역시장의 관 리범위 중 공공 하수처리시설은 규칙에서 규정하 고 있으므로 삭제 하고 문안정리</p>
<p>제7조(공공하수도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비용배분) ① 특별시장·광 역시장의 공공하수도 설치 및 관리에 따른 비용부담은 다음과 같다.</p> <p>1. 하수종말처리시설의 설치 및 운영관리비</p> <p>2. 차집관거의 중계펌프장, 차집 관거의 설치·개축·수선 및 유지관 리비</p> <p>3. 간선하수관거(합류식 관거 및 우수관거 : 안지름 900mm 또는 통수단면적 0.7m<sup>2</sup>이상), 오수관 (안지름 500mm이상)의 설치·개 축·수선 및 유지관리비 및 차집 관거의 준설비</p>	<p>제4조(공공하수도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비용배분) ① 특별시장·광 역시장은 제3조제1호에 규정한 공공하수도시설의 설치 및 관 리 비용을 부담한다.</p>	<p>제4조(공공하수도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비용배분) ① (개정안과 같 음)</p>	

<p>4. 하수중계펌프장·빗물펌프장의 설치·개축 및 확장사업비</p> <p>5.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하수도정비 시책사업 및 기타비용</p> <p>② 구청장의 공공하수도 설치 및 관리에 따른 비용부담은 다음과 같다.</p> <p>1. 제1항제3항의 간선관거 이하 하수관거의 설치·개축수선 및 유지관리비</p> <p>2. 하수중계펌프장·빗물펌프장의 수선 및 유지관리비</p> <p>3. 간이펌프장(무인수중펌프)의 설치·개축·수선 및 유지관리비</p> <p>4. 기타 하수도시설물의 설치·개축·수선 및 유지관리비, 기타 비용</p> <p>③ 특별시장·광역시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비용으로 유지관리가 원활히 추진될 수 없다고 판단될 때에는 일부 예산을 구청장에게 보조할 수 있다.</p>	<p>② 구청장은 제3조제2호에 규정한 공공하수도시설의 설치 및 관리 비용을 부담한다.</p>	<p>② (개정안과 같음)</p>	
<p>제8조(사용개시 등의 신고) ① 배수설비를 설치완료하고 공공하수도를 사용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조례시</p>	<p>제5조(사용개시 등의 신고) ① 배수설비를 설치완료하고 공공하수도를 사용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p>	<p>제5조(사용개시 등의 신고) ① (개정안과 같음)</p>	

<p>행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u>20일 이내에</u>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배수설비의 사용을 개시·중지·폐지하거나 중지중에 있던 것을 다시 사용할 때</li> <li>2. 지하수·하천수·온천수·해수·기타 상수도 급수에 의하지 아니하는 물을 사용하고자 할 때</li> <li>3. 물의 사용량과 하수의 배출량이 현저히 다를 때</li> <li>4. 기타 배출되는 하수의 양태가 이 조례에 의하여 사용자에게 적용되는 요금의 적용구분과 달라졌을 때</li> </ol> <p>② 영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배수설비 설치신고 및 ○○시(군) 상수도 급수조례(이하 "급수조례"라 한다)의 규정에 의한 급수사용개시신고가 있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개시신고가 있는 것으로 본다.</p>	<p>는 조례시행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30일 이내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배수설비의 사용을 개시·중지·폐지하거나 중지중에 있던 것을 다시 사용할 때</li> <li>2. 지하수·하천수·온천수·해수·기타 상수도 급수에 의하지 아니하는 물을 사용하고자 할 때</li> <li>3. 물의 사용량과 하수의 배출량이 현저히 다를 때</li> <li>4. 기타 배출되는 하수의 양태가 이 조례에 의하여 사용자에게 적용되는 요금의 적용구분과 달라졌을 때</li> </ol> <p>②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개시 등의 신고가 있는 것으로 본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수도급수조례의 규정에 의한 급수사용개시신고</li> <li>2. 제13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이 공사를 시행한 경우</li> <li>3. 지하수법 제7조 및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지하수개발·이용의</li> </ol>		
---	---	--	--

	허가 및 지하수개발·이용의 신고		
제9조(일시사용신고) 토목공사 또는 건축공사, 기타의 사유로 공공하수도를 일시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조례사용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6조(일시사용신고) 토목공사 또는 건축공사, 기타의 사유로 공공하수도를 일시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조례시행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6조(일시사용신고) (개정안과 같음)	
제10조(하수관거 준설 등) 시장·군수·구청장은 하수관거의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하기 위하여 매년 1회이상 하수관거상태를 점검하여야 하며, 하수관거의 청소 및 준설은 2년에 1회이상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현지여건상 준설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수시 준설을 할 수 있다.	제7조(하수관거 준설 등)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하수관거의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매년 1회 이상 하수관거상태를 점검하여야 한다. ② 하수관거의 청소 및 준설은 매년 1회 이상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침수·장마 등 재해발생 방지 또는 하수의 원활한 흐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청소 및 준설을하여야 한다.	제7조(하수관거 준설 등) (개정안과 같음)	
제11조(시설 또는 공작물 설치의 준공등) ① 점용자가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다른 시설 또는 공작물의 설치를 완료한 때에는 조례시행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의 준공검사	제8조(점용 시설 또는 공작물의 준공검사 등) ① 법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점용허가를 받은 자는 허가받은 시설 또는 공작물의 설치 등을 완료한 때에는 조례시행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8조(점용 시설 또는 공작물의 준공검사 등) ① (개정안과 같음)	-

<p>를 받아야 한다.</p> <p>② 점용자는 점용기간이 만료된 때에는 그 다른 시설 또는 공작물을 제거하고 공공하수도를 원상으로 복구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군수·구청장이 원상으로 복구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시장·군수·구청장의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p> <p>② 점용허가를 받은 자는 점용기간이 만료된 때에는 설치한 시설 또는 공작물을 등을 제거하고 원상으로 복구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군수·구청장이 원상으로 복구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② (개정안과 같음)</p>	
<p><u>〈신설〉</u></p>	<p>제9조(중수도의 설치신고 및 확인)</p> <p>① 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해 중수도를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도서를 구비하여 미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중수도 사용계획서</li> <li>2. 처리시설의 위치, 용량, 사업비, 사업기간 등을 기재한 사업개요서</li> <li>3. 중수도 시설용량의 산출근거를 기재한 서류</li> <li>4. 중수도와 관련된 설계도, 평면도</li> </ul> <p>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의 신고를 받은 경우 시설을 확인하여</p>	<p>제9조(중수도의 설치신고 및 확인)</p> <p>①(개정안과 같음)</p> <p>② (개정안과 같음)</p> <p>③ (개정안과 같음)</p>	

	<p>중수도로 인정되는 시설분에 대해 서 중수도 설치확인서를 교부하여 야 한다.</p> <p>③ 중수도 설치확인서를 교부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신속히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 하여야 한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중수도 시설의 확장계획</li> <li>2. 중수도 시설의 운전중지</li> <li>3. 사업자 또는 관리자 변경</li> </ul> <p>④ 법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해당 되지 않는 자가 중수도를 설치하 여 수도요금 또는 하수도사용료를 경감 받고자 할 때에는 제1항 내 지 제3항을 준용한다.</p> <p>⑤ 시장·군수·구청장은 신고사항 및 중수도 시설사항 등을 소속 공 무원으로 하여금 직접 조사하게 하여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p>	<p>④ (개정안과 같음)</p> <p>⑤ (개정안과 같음)</p>	
<u>〈신설〉</u>	<p>제10조(중수도의 관리) 중수도를 설 치한 사업자 또는 관리자는 중수 도의 관리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p> <p>1. 저수조는 수량 부족에 대비하여 수돗물에 의한 보급이 가능하도록</p>	<p>제10조(중수도의 관리)</p> <p>(개정안과 같음)</p>	

	<p>하여야 하며 이 경우 중수가 수돗물과 혼합되지 않는 구조로 할 것.</p> <p>2. 송·배수시설은 수도, 전기, 기타 배관과 구별될 수 있도록 할 것.</p> <p>3. 이용설비에 “중수도 사용”이라는 표지를 할 것.</p> <p>4. 중수도의 운전기록 및 수질검사 등의 관련 서류를 기록·보관 할 것.</p>		
<u>〈신설〉</u>	<p>제11조(중수도의 용도제한) 중수도의 용도는 수세식변소용수, 살수용수, 조경용수, 세차·청소용수 등으로 사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시장·군수·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별도로 정할 수 있다.</p>	<p>제11조(중수도의 용도제한)</p> <p>(개정안과 같음)</p>	
<u>〈신설〉</u>	<p>제12조(중수도의 수질검사) ① 중수도를 설치한 사업자 또는 관리자는 수질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p> <p>② 수질검사의 횟수는 PH, 냄새, 색도, 탁도, 외관 및 잔류염소(결합)에 대하여는 매일 1회 이상,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 화학적 산소요구량 및 대장균군수에 대</p>	<p>제12조(중수도의 수질검사) ① (개정안과 같음)</p> <p>② (개정안과 같음)</p>	

	<p>하여는 매월 1회 이상으로 한다.</p> <p>③ 채수장소는 사용장소에 가장 가까운 저수조의 출구 부근으로 한다.</p> <p>④ 중수도를 설치한 사업자 또는 관리자는 수질검사의 결과를 기록·유지하여야 하며, 그에 따른 서류를 보관·관리하여야 한다.</p>	<p>③ (개정안과 같음)</p> <p>④ (개정안과 같음)</p>	
제3조(시장·군수·구청장의 공사시행) ①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배수설비의 설치·이설·개조·수선 또는 철거공사를 시행할 수 있다.	<p>제13조(시장·군수·구청장의 공사시행) ①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배수설비의 설치·변경 또는 폐지공사를 시행할 수 있다.</p> <p>1. 도로공사 등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p> <p>2. 법 제2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내용과 다르게 설치되어 개선명령 하였으나, 이를 계속 이행하지 아니할 때</p> <p>3. 배수설비설치자로부터 공사시행 요청이 있을 때</p>	<p>제13조(시장·군수·구청장의 공사시행) ① (개정안과 같음)</p> <p>1. (개정안과 같음)</p> <p>2. 법 제2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내용과 다르게 설치되었거나 규칙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배수설비의 설치 기준 및 구조기준에 위배하여 설치된 배수설비에 대하여 개선명령 하였으나, 이를 계속 이행하지 아니할 때</p> <p>3. (개정안과 같음)</p>	- 조항 정리

<p>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이 공사를 할 때에는 그 공사비용을 배수설비설치자가 부담한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사비는 자재비, 시공비, 지장물이전비, 도로의 복구비, 일반행정관리비등 공사에 소요되는 총비용으로 한다.</p> <p><u>〈신설〉</u></p> <p>④ 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공사비용은 공사비의 개산액을 선납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군수·구청장이 선납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제4조(배수설비의 시공) ① 배수설비의 시공은 건설업법에 의한</p>	<p>3. 배수설비설치자로부터 공사시행 요청이 있을 때</p> <p>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이 공사를 시행하는 때에는 그 공사비용을 배수설비설치자가 부담한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사비는 자재비, 시공비, 지장물이전비, 도로의 복구비, 일반행정관리비 등 공사에 소요되는 총비용으로 한다.</p> <p>④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를 시행하는 경우에는 그 공사에 소요되는 비용을 법 제73조의 규정에 따라 배수설비설치의무자에게 징수할 수 있다.</p> <p>⑤ 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공사비용은 공사비의 개산액을 선납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군수·구청장이 선납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제14조(배수설비의 시공) 배수설비를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영(안)</p>	<p>② (개정안과 같음)</p> <p>③ (개정안과 같음)</p> <p>④(개정안과 같음)</p> <p>⑤ (개정안과 같음)</p>	
--	--	--	--

<p><u>상·하수도설비공사업면허를 받은 자가 시공하여야 한다.</u> 다만, 하수도사용조례시행규칙(이하 "조례시행규칙"이라 한다)이 정하는 경미한 공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② 시장·군수·구청장은 배수설비의 부실시공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조례시행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의 시공업자 중에서 공사 시행자를 지정할 수 있다.</p>	<p><u>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춘 자에게 시공하도록 하여야 한다.</u> 다만, 옥내배수설비 또는 하수도의 기능에 영향을 주지 않는 배수설비의 준설·보수 등 조례시행규칙이 정하는 경미한 공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② 시장·군수·구청장은 배수설비의 부실시공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조례시행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의 시공업자 중에서 공사 시행자를 지정할 수 있다.</p>	<p>〈삭제〉</p>	<p>- 법령 근거 미비</p>
<p><u>제4조의2(배수설비 준공검사) ①법 제2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배수설비 설치자가 준공검사를 받고자 할 때에는 <u>별표5</u> 서식의 배수설비준공검사신청서에 배수설비 및 접속부분의 설치시공 전·중·후의 사진을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u> 다만, 건축법 제18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 사용승인이 필요한 경우 배수설비준공검사신청서를 건축물 사</p>	<p><u>제15조(배수설비 준공검사) ①법 제27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배수설비 설치의무자가 준공검사를 받고자 할 때에는 <u>별표 1</u> 서식의 배수설비준공검사신청서에 배수설비 및 접속부분의 설치시공 전·중·후의 사진을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u> 다만, 건축법 제18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 사용승인이 필요한 경우 배수설비준공검사신청서를 건축</p>	<p><u>제14조(배수설비 준공검사) ①(개정안과 같음)</u></p>	<p>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의</p>

<p>용승인 신청시 함께 제출할 수 있다.</p> <p>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u>하수도법 제24조제2항</u>의 규정에 의한 배수설비 설치자의 신고사항 및 <u>동법시행규칙 제12조</u>의 규정에 의한 배수설비 설치 및 그 구조기준 등에 적합하게 설치되었는지 여부를 검사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p>	<p>물 사용승인 신청시 함께 제출 할 수 있다.</p> <p>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u>법 제27조제3항 및 제4항</u>의 규정에 의한 배수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자의 신고사항 및 <u>규칙 제23조</u>의 규정에 의한 배수설비 설치 및 그 구조기준 등에 적합하게 설치되었는지 여부를 검사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p>	<p>규정에 의한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법 제27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배수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자의 신고사항 및 <u>규칙 제23조</u>의 규정에 의한 배수설비 설치 기준 및 그 구조기준 등에 적합하게 설치되었는지 여부를 검사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p>	<p>- 조항 및 조문 정리</p>
<p>제5조(배수설비의 관리) ① 법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배수설비의 개축, 수선 및 유지관리는 그 설치자가 하여야 한다.</p> <p>② 배수설비설치자는 배수설비의 관리소홀로 인하여 누수, 주위의 오염발생 또는 공공하수도의 기능장애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정하게 관리하여야 한다.</p>	<p>제16조(배수설비의 유지·관리) 법 제27조제6항의 규정에 따른 배수설비의 유지·관리는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p> <p>1. 배수설비 설치자는 하수가 공공하수도로 유입되도록 하여야 하며 당해 배수설비로 인해서 공공하수도의 기능장애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지·관리하여야 한다.</p> <p>2. 시장·군수·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하수가 발생하는 토지의 경계로부터 공공하수도에 연결된</p>	<p>제15조(배수설비의 유지·관리)</p> <p>(개정안과 같음)</p>	<p>- 조항 정리</p>

	부분까지의 배수설비를 유지·관리할 수 있다.		
제12조(사용료) ①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하수도 사용료를 징수하기 위해서는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개시 공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하수종말처리시설이 미설치된 시장·군수·구청장은 하수관거 유지·관리비만을 사용료로 징수하여야 한다. ② 공공하수도 사용료는 공공하수도 사용자로부터 배출하는 하수의 양과 업종에 따라 <u>별표1</u> 의 요율에 의하여 징수하여야 한다. 다만, 우수 또는 해안에 직접 방류하는 순수한 냉각수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수질환경보전법시행규칙 제8조 ( <u>별표 5</u> 비고)의 규정에 의하여 별도 배출허용기준이 고시된 지역의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은 <u>별표1</u> 에 의한 하수도 사용료 외에 <u>별표2</u> 에 의한 수질하수도 사용료를 추가로 징수할 수 있다.	제17조(공공하수도 사용료) ① 법 제65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하수도 사용료는 법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사용 공고된 배수구역 (또는 하수처리구역)을 대상으로 징수한다.  ② 공공하수도 사용료는 공공하수도로 배출하는 하수의 양과 업종에 따라 <u>[별표2]</u> 의 산정 기준에 의하여 부과·징수 한다.  ③ 수질환경보전법 제32조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별도 배출허용기준이 고시된 지역의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은 <u>별표 2</u> 에 의한 공공하수도 사용료 외에 <u>별표 3</u> 에 의한 수질하수도 사용료를 추가로 징수할 수 있다.	제16조(공공하수도 사용료) ① (개정안과 같음)  ② (개정안과 같음)  ③ (개정안과 같음)	
제15조(사용료의 납기와 징수방법)	제18조(공공하수도 사용료의 납기)	제17조(공공하수도 사용료의 납기)	- 조항 정리

<p>① 공공하수도의 사용료는 수도급수사용료와 납기를 같이 하며, 수도급수사용료 납부고지서에 함께 고지하여 동시에 징수한다.</p> <p>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시장군수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방법을 따로 정하여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p> <p>③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하수도를 일시 사용하는 경우의 하수도 사용료는 신고신청서에 추산하여 선납토록 하여야 하며, 그 사용을 완료하였을 때에는 정산하여 환불 또는 추징한다. 다만, 공공하수도의 사용신고기간이 2개월을 초과할 경우에는 2개월마다 2월분에 해당하는 사용료를 추산하여 선납토록 하여야 한다.</p> <p>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하수도의 사용료를 징수할 경우 시·군·자치구 수도사용료 징수업무처리부서에 위탁하여 징수하고, 위탁경비부담금은 위탁자와 수탁자의 협의에 의하여 부</p>	<p>와 징수방법) ① 공공하수도의 사용료는 상수도급수사용료와 납기를 같이 하며, 수도요금고지서에 함께 고지하여 동시에 징수한다.</p> <p>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시장군수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방법을 따로 정하여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p> <p>③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하수도를 일시 사용하는 경우의 하수도 사용료는 신고신청서에 추산하여 선납토록 하여야 하며, 그 사용을 완료하였을 때에는 정산하여 환불 또는 추징한다. 다만, 공공하수도의 사용신고기간이 2개월을 초과할 경우에는 2개월마다 2월분에 해당하는 사용료를 추산하여 선납토록 하여야 한다.</p> <p>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하수도의 사용료를 징수할 경우 시·군·자치구의 수도사용료 징수업무처리부서에 위탁하여 징수하고, 위탁경비부담금은 위탁자와 수탁자의 협의에 의하여 부</p>	<p>와 징수방법) ①(개정안과 같음)</p> <p>② (개정안과 같음)</p> <p>③ (개정안과 같음)</p> <p>④ (개정안과 같음)</p> <p>⑤ (개정안과 같음)</p>	<p>- 조항 정리</p>
--	--	---	----------------

<p>다.</p> <p>⑤ 계측기의 고장으로 <u>인한</u> 사용료부과가 불가능한 경우 부과 당월기준 이전 3월분을 평균하여 부과징수한다.</p>	<p>답한다.</p> <p>⑤ 계측기의 고장으로 <u>인하여</u> 사용료부과가 불가능한 경우 부과당월기준 이전 3월분을 평균하여 부과징수한다.</p>		
<p>제13조(하수배출량의 인정)</p> <p>① 공공하수도의 사용자가 수도사용자(전용수도사용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인 경우에는 수도급수량을 하수배출량으로 본다.</p> <p>② 공공하수도의 사용자가 수도 사용자가 아닌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신고된 양을 공공하수도관리청의 담당공무원의 확인에 의하여 확정한다.</p> <p>1. 지하수법 제7조 또는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하수 개발·이용의 허가 또는 신고를 한 경우에는 지하수 이용량</p> <p>2. 하천수, 온천수, 해수 기타의 경우에는 제8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신고량</p>	<p>제19조(하수배출량의 산정) 공공하수도 사용료 부과를 위한 하수배출량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산정한다.</p> <p>1. 공공하수도의 사용자가 상수도사용자(전용상수도사용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인 경우에는 상수도급수량을 하수배출량으로 본다.</p> <p>2. 공공하수도의 사용자가 상수도사용자가 아닌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신고된 양을 공공하수도관리청의 담당공무원의 확인에 의하여 확정한다.</p> <p>가. 지하수법 제7조 또는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하수 개발·이용의 허가 또는 신고를 한 경우에는 지하수 이용량</p> <p>나. 하천수, 온천수, 해수 기타의 경우에는 제5조제1항제2호</p>	<p>제18조(하수배출량의 산정)</p> <p>(개정안과 같음)</p>	<p>- 조항 정리</p>

<p>3. 물의 사용량과 하수의 양이 현저히 다를 경우에는 제8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신고량          ③ 공공하수도의 사용자가 수도 사용자이면서 지하수 등을 겸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수도급 수량과 지하수 등의 사용량을 합산한 수량을 하수배출량으로 본다.</p>	<p>의 규정에 의한 신고량          다. 물의 사용량과 하수의 배출량이 현저히 다를 경우에는 제5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신고량          3. 공공하수도의 사용자가 상수도 사용자이면서 지하수 등을 겸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상수도급수량과 지하수 등의 사용량을 합산한 수량을 하수배출량으로 본다.</p>		
<p>제14조(하수배출량의 조사)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하수배출량의 인정이 적절하지 못하다고 판단하거나 공공하수도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배출되는 하수의 양 또는 질을 직접 조사하게 하거나 조사를 위하여 계측장치를 설치할 수 있다. 다만, 1일 100톤이상의 하수를 배출하는 경우에는 사용자에게 공인기관의 검사를 받은 계측장치를 사용자 부담으로 하여야 하며, 계측장치 설치후 봉인</p>	<p>제20조(하수배출량의 조사)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하수배출량의 인정이 적절하지 못하다고 판단하거나 공공하수도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배출되는 하수의 양 또는 질을 직접 조사하게 하거나 조사를 위하여 계측장치를 설치할 수 있다. 다만, 사용자가 하수배출량을 입증하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공인기관의 검사를 받은 계측장치를 사용자 부담으로 설치토록 할 수 있으며, 계측장</p>	<p>제19조(하수배출량의 조사)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하수배출량의 인정이 적절하지 못하다고 판단하거나 공공하수도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배출되는 하수의 양 또는 질을 직접 조사하게 하거나 조사를 위하여 계측장치를 설치할 수 있다. 다만, 사용자가 하수배출량을 입증하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공인기관의 검사를 받은 계측장치를 사용자 부담으로 설치토록 할 수 있으며, 계측장</p>	<p>- 조항 정리</p>

<p>은 시장·군수·구청장이 한다.</p> <p>② 사용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 및 계측장치의 설치를 정당한 사유없이 거부할 수 없으며 설치된 계측장치를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한다.</p> <p>③ 사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제1항의 계측장치를 훼손 또는 망설하였을 경우 즉시 원상복구 하여야 하며, 검사유효기간이 경과되었거나 자연고장 발생시에도 또한 같다.</p> <p>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사한 하수의 양이 신고한 하수배출량과 다를 때에는 조사결과를 기준으로 하여 하수배출량을 조정할 수 있다. 다만, <u>수질환경보전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폐수량측정기를 설치한 경우에는 동 기기에 의해 측정된 폐수량을 하수배출량으로 볼 수 있다.</u></p> <p>⑤ 계측장치 설치 후 설치장소에 계측기 점검 및 검침에 방해가 되는 물건의 적치, 공작물 설치 등을 하여서는 안 된다.</p>	<p>치 설치 후 봉인은 시장·군수·구청장이 한다.</p> <p>② 사용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고, 설치된 계측장치를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한다.</p> <p>③ 사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제1항의 계측장치를 훼손 또는 망설하였을 경우 즉시 원상복구 하여야 하며, 계측장치의 검사유효기간이 경과되었거나 자연고장 발생시에도 또한 같다. 이 경우의 하수배출량은 최근 6개월 중 최대치에 해당하는 월의 하수량을 적용할 수 있다.</p> <p>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사한 하수의 양이 신고한 하수배출량과 다를 때에는 조사결과를 기준으로 하여 하수배출량을 조정할 수 있다. 다만, 수질환경보전법 제3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폐수배출량 측정기기를 설치한 경우에는 동 기기에 의해</p>	<p>치 설치 후 봉인은 시장·군수·구청장이 한다.</p> <p>② (개정안과 같음)</p> <p>③ (개정안과 같음)</p> <p>④ (개정안과 같음)</p> <p>⑤ (개정안과 같음)</p>	
---	---	--	--

	<p>측정된 폐수량을 하수배출량으로 볼 수 있다.</p> <p>⑤ 계측장치 설치 후 설치장소에 계측기 점검 및 검침에 방해가 되는 물건의 적치, 공작물 설치 등을 하여서는 안 된다.</p>		
제16조(점용료) ① 시장·군수·자치구청장은 <u>하수도법 제20조</u> 의 규정에 의한 공공하수도를 점용허가를 할 때에는 <u>별표 3</u> 의 기준에 따라 점용료를 징수한다.  ② 점용료는 연액으로 산정한다. 다만, 그 연도의 점용기간이 1년 미만일 때에는 월액으로 계산하고, 1월 미만일 때에는 1월로 계산한다.  ③ 점용료는 회계연도별로 구분하여 각 연도분을 그 연도의 1월 중에 징수하되, 허가시에는 그 연도분을 선납하게 한다.  ④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점용하는 자에 대하여는 사실상 점용이 개시된 날부터 점용료를 산정하여 징수한다.  개시된 날부터 점용료를 산정하여 징수한다.	<p>제21조(공공하수도 점용료) ① 시장·군수·자치구청장은 법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공공하수도의 점용을 허가를 한 때에는 <u>별표 4</u>의 기준에 따라 점용료를 징수한다. ② 점용료는 점용기간에 따라 산정한다.</p> <p>〈 삭제 〉</p> <p>③ 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점용하는 자에 대하여는 사실상 점용이 개시된 날부터 점용료를 산정하여 징수한다. ④ 시장·군수·구청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점용료를 납부기한 내</p>	<p>제20조(공공하수도 점용료) ① (개정안과 같음)</p> <p>②(개정안과 같음)</p> <p>③(개정안과 같음)</p> <p>④ (개정안과 같음)</p> <p>- 조항 정리</p>	

<p>⑤ 시장·군수·구청장이 정당한 사유없이 점용료를 납부기한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점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p>	<p>에 납부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점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p>		
<p>제17조(원인자부담금) ① 법 제32 조의 규정에 의한 원인자부담금은 공공하수도(하수관거 및 평프시설, 하수종말처리시설)의 신증설에 필요한 기본 및 실시설계비, 환경평가비, 용지비(지장물보상비포함), 공사비(부대공사비포함), 시공감리비, 기타 부대비로 한다. 다만, 하수관거는 개발지역에서 하수종말처리시설까지 유입시키기 위한 하수관거설치비로 한다.</p> <p>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원인자부담금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별표 4와 같이 산정한다.</p> <p>1. 공공하수도관리청은 법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은 인허가사항이 법 제32조제4항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배수설비의 계획하수량이 당해 배수설비가 공공하수도에서 접속되는 곳에서의 공공하수도 계</p>	<p>제22조(개별건축물 등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① 법 제6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원인자부담금의 산정기준·징수방법 등은 다음 각호와 같이 한다.</p> <p>1. 오수발생량은 시행령 제33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고시한 오수발생량 산정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다.</p> <p>2. 건축물의 증축 및 용도변경 등으로 인한 오수발생량 증가 시 원인자부담금 부과를 위한 오수량은 다음 각호와 같이 산정한다.</p> <p>가. 기존 건축물의 증축·개축·재건축 행위 및 건축물 용도변경 등으로 오수량이 증가하는 경우 기존 건축물 등에서 발생되는 오수량은 제외한다. 다만, 건축물 신축 후 1년 이내</p>	<p>제21조(개별건축물 등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① 법 제6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원인자부담금의 산정기준·징수방법 등은 다음 각호와 같이 한다.</p> <p>1. 오수발생량은 시행령 제24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시한 오수발생량 산정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다.</p> <p>2. 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 오수발생량은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p> <p>가. 신축·증축·용도변경 등 각각의 행정행위로 인한 오수발생량이 <math>10m^3/\text{일}</math> 이상인 경우 전체 오수발생량</p> <p>나. 수회에 걸쳐 이루어지는 신축·증축·용도변경 등의 행정행위로 오수발생량이 <math>10m^3/\text{일}</math> 이상인 경우 <math>10m^3/\text{일}</math>을 초과하는 양</p>	<p>- 부담금 부과대상 여부, 부담금 부과대상 오수량, 부담금 부과주체 등을 객관화 하면서 형평성을 고려하여 수정함</p>

<p>회수량이 10분의 1이상의 하수를 배제할 수 있는 배수설비를 설치함으로 인하여 공공하수도(하수관거, 하수종말처리시설, 펌프장)의 개축이 필요하게 될 때에는 그 비용의 3분의 2이상을 배수설비설치자에게 부담시켜야 함.</p> <p>1) 하수도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배수설비 신고량</p> <p>2) 수질환경보전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및 신고량</p> <p>3) 수질환경보전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공동방지시설의 설치 시 승인된 량</p> <p>2. 공공하수도관리청은 법 제3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타공사 또는 타행위로 인하여 필요하게 된 공공하수도에 관한 공사에 요하는 비용의 전부를 당해 타공사의 시행자 또는 타행위자가 부담하여야 함.</p> <p>1) 타공사에 의한 공공하수도 공사 : 타공사로 인하여 공공하수도 공사가 필요하게 된 경우</p>	<p>(준공일을 기준으로 한다)에 용도변경 등으로 오수량이 증가하는 경우에는 기준 건축물 등에서 발생하는 오수량을 포함한다.</p> <p>나. 건축물 용도변경 등으로 인한 오수량은 해당 건축물 전체를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불가피한 경우 건축물 소유자 별로 산정할 수 있다.</p> <p>3. 원인자부담금은 다음과 같이 산정 한다.</p> <p>가.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오수발생량(<math>m^3</math>/일)에 단위단가(원/<math>m^3</math>/일)를 곱하여 산정한다.</p> <p>나. 오수량 <math>1m^3</math>/일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는 [별표 5]</p>	<p>〈산정 예〉</p> <table border="1"> <thead> <tr> <th>구분</th><th>오수 발생량</th><th>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 오수량</th><th>부과 주</th></tr> </thead> <tbody> <tr> <td>가.목</td><td>11톤</td><td>11톤</td><td>행정 행위를 건축물 등의 오수발생량</td></tr> <tr> <td>나.목</td><td>11톤</td><td>1톤</td><td>일 이상 되는 정 행위를 하 물 등의 소유</td></tr> </tbody> </table> <p>3..건축물 등의 오수발생량은 해당 건축물 전체를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불가피한 경우 건축물 소유자 별로 산정할 수 있다.</p> <p>4. 원인자부담금의 금액은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 오수발생량(<math>m^3</math>/일)에 단위단가(원/<math>m^3</math>/일)를 곱하여 산정한다.</p> <p>5. 오수발생량 <math>1m^3</math>/일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는 [별표 5]의 산정방식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방자치단체의 공보 또는</p>	구분	오수 발생량	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 오수량	부과 주	가.목	11톤	11톤	행정 행위를 건축물 등의 오수발생량	나.목	11톤	1톤	일 이상 되는 정 행위를 하 물 등의 소유
구분	오수 발생량	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 오수량	부과 주											
가.목	11톤	11톤	행정 행위를 건축물 등의 오수발생량											
나.목	11톤	1톤	일 이상 되는 정 행위를 하 물 등의 소유											

<p>는 다음과 같음.</p> <p>가) 상수도관, 가스관, 통신관, 전주 등 설치공사로 인하여 공공하수도의 이설·보수·개수 등이 필요한 경우</p> <p>2) 태행위에 의한 공공하수도 공사 : 공공하수도 이외의 행위로 인하여 필요하게 된 경우는 다음과 같음.</p> <p>가) 도시의 개발사업(도시계획법, 주택건설촉진법, 도시재개발법, 택지개발촉진법, 토지구획정리사업법, 도시공원법 등)</p> <p>나) 산업입지 및 공업단지조성 사업(국가공업단지조성, 지방공업단지조성, 농공단지조성, 중소기업단지조성, 수출자유지역조성, 공장부지조성 등)</p> <p>다) 공항의 건설사업</p> <p>라) 관광단지의 개발사업(관광지 및 관광단지조성, 온천단지, 공원집단시설지구 등)</p> <p>마) 기타 법 제5조의2 규정에 의한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이나 도시계획상 하수처리구역으로 정하는 것이 불합리한 지역중</p>	<p><u>5) 의 산정방식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매년 지방자치단체의 공보 또는 일간신문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u></p> <p>4. 원인자부담금의 징수방법 및 시기 등은 다음과 같이 한다.</p> <p>가. 부과시기는 건축물의 신축, 증축, 개축·재축 및 건축물 용도변경 등에 대한 인허가시 부과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구체적인 사항은 조례시행규칙에서 정한다.</p> <p>나. 징수(납부)시기는 건축 준공허가전으로 하되, 건축물 용도변경 등의 경우에는 인허가 또는 승인 전으로 한다.</p> <p>② <u>제24조의 규정에 의한 태행위에 해당하여 원인자부담금을 부과징수한 경우 또는 원인자가 태행위 지역에서 발생하는 하수를 적정처리 할 수 있는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한 경우에는 당해 지역 내 건축물의 증축 및 용도변경 등에 대해서는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u></p>	<p>일간신문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p> <p>6. (개정안 제4호와 같음)</p> <p>② <u>제23조의 규정에 의한 태행위에 해당하여 원인자부담금을 부과징수한 경우 또는 원인자가 태행위 지역에서 발생하는 하수를 적정처리 할 수 있는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한 경우에는 당해 지역 내 건축물의 증축 및 용도변경 등에 대해서는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u></p>	<p>- 매년 공고토록한 내용 삭제</p> <p>- 조항 정리</p>
---	--	---	--

<p>타행위자가 하수처리구역으로 포함시킬 필요로 요청하여 공공하수도의 신·증설이 필요한 경우</p> <p>3. 공공하수도관리청은 법 제32조 제3항에 의한 공공하수도를 손괴시킬 행위를 하는 자가 있을 때에는 그로 인하여 필요하게 된 공공하수도의 수선 또는 유지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를 그 행위자가 부담하여야 함.</p> <p>1) 상수도관, 가스관, 통신관, 전주 등의 매설 및 이설공사시 공공하수도를 파손 또는 해손하는 경우</p> <p>4. 공공하수도관리청은 법 제32조 제4항에 의하여 하수종말처리시설의 사용개시이후에 그 하수처리구역안에서 다음과 같은 사유로 인하여 오수정화시설 및 단독정화조를 설치하지 아니하는 자에게 해당 건축물의 하수량(건물 등의 증축·용도변경으로 인하여 하수량이 증가한 경우에는 그 증가량을 말한다)에 대하여 하수종말처리시설 설치비용의 부담액과 해당 시·군·구의 해</p>	<p>부담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p> <p><u>제23조(타공사에 대한 원인자부담금)</u> ① 법 제6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타공사”에 대한 원인자부담금은 당해 공사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를 타공사의 시행자가 부담하여야 한다.</p> <p>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원인자부담금은 타공사를 하는 자와 공공하수도관리청이 협의하여 산정한다.</p> <p>③ 공공하수도관리청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가 성립되지 않을 경우 타공사를 하는 자에게 법 제16조의 규정에 따른 허가를 받아 필요한 공사를 시행하도록 할 수 있다.</p>	<p><u>제22조(타공사에 대한 원인자부담금)</u> ① (개정안과 같음)</p> <p>②(개정안과 같음)</p> <p>③ (개정안과 같음)</p>	<p>- 조항 정리</p>
	<p><u>제24조(타행위에 대한 원인자부담금)</u></p> <p>① 법 제6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타행위”에 대한 원인자부담금은 타행위에 의해 발생되는 하수량을 처리할 수 있는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비용과 당해 지역에서 발생하는 하수를 공공하수도로 연결시키기 위한 하수</p>	<p><u>제23조(타행위에 대한 원인자부담금)</u></p> <p>① (개정안과 같음)</p>	<p>- 조항 정리.</p>

<p>당 건축물의 오수처리시설 설치 비용(합류식 하수관거지역으로 단독정화조를 설치한 경우에는 오수처리시설 설치비용에서 단독정화조 설치비용을 제외한 비용) 또는 단독정화조 설치비용을 비교하여 적은 비용의 전액을 원인자부담금으로 납부하여야 함. 다만, 배수설비의 계획 하수량이 "제2항제1호"에 해당될 경우에는 관거비용은 이를 추가로 산정·합산하여 부담시켜야 함.</p> <p>1) 오수를 하수종말처리시설에 유입·처리하는 경우</p> <p>2) 수세식변소에서 발생하는 오수를 우·오수 분류식 하수도를 통하여 하수종말처리시설에 유입·처리하는 경우</p> <p>③ 공공하수도관리청은 원인자부담금 부과를 위하여 매년 2월말까지 다음 각호에 관한 사항을 당해지방자치단체의 공보 또는 일간신문에 공고하여야 한다.</p> <p>1. 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 하수발생량 산정방법(당해사업의 기본</p>	<p>관거 설치비용의 전액을 사업시행자에게 부과한다.</p> <p>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비용은 다음 각호와 같이 산정한 하수발생량에 단위단가(원/m<sup>3</sup>/일)를 곱하여 산정한다.</p> <p>1. 하수발생량 산정</p> <p>가. 하수발생량은 타행위의 준공년도에 해당하는 시·군 하수도정비기본계획상의 하수발생량 원단위(타행위의 준공연도가 하수도정비기본계획 목표연도의 중간일 경우, 직선보간법으로 산정한다)를 기준으로 산정한다.</p> <p>나. 가목에 의한 하수발생량 산정시 타행위 지역안의 기존건축물에서 발생하는 하수량은 제외한다.</p> <p>2. 하수발생량에 대한 원인자 부담금 단위단가는 제22조제1항제3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별표5]에 따라 산정한다.</p> <p>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하수관거 설치비용은 타행위의 부지경계에서 기준 공공하수관거까지 하수를 유입시키기 위한 하수관거설치에 소요되는 전체 비용으</p>	<p>② (개정안과 같음)</p> <p>1. (개정안과 같음)</p> <p>가. 하수발생량은 타행위의 준공년도에 해당하는 시·군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의 하수발생량 원단위(타행위의 준공연도가 하수도정비기본계획 목표연도의 중간일 경우, 직선보간법으로 산정한다)를 기준으로 산정한다.</p> <p>나. 가목에 의한 하수발생량 산정시 타행위 지역안의 기존건축물에서 발생하는 하수량은 제외한다.</p> <p>2. 하수발생량에 대한 원인자 부담금 단위단가는 제21조제1항제3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별표5]에 따라 산정한다.</p> <p>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하수관거 설치비용은 타행위의 부지경계에서 기준 공공하수관거까지 하수를 유입시키기 위한 하수관거설치에 소요되는 전체 비용으</p>	<p>- 조문 정리</p> <p>- 조항 정리</p> <p>- 조문 정리</p>
---	--	---	--

<p>또는 실시설계 보고서상의 수량,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 별표3 및 동법 시행규칙 제21조 별표5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건축물의 용도별 오수 발생량 및 단독정화조 처리대상 인원 산정방법)</p> <p>2. 별표4의 산정방식에 따른 m' 당 원인자부담금 부과액</p> <p>3. 오수처리시설 및 정화조의 규모별 설치비용</p> <p>④ 원인자부담금은 원칙적으로 당해사업 또는 시설물의 착공후부터 완공전에 정수하며 그 납부시기 및 납부방법은 시장·군수·구청장이 조례에서 정한다.</p>	<p>계에서 기존 공공하수관거까지 하수를 유입시키기 위한 하수관거 설치비용을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기존 공공하수관거의 용량이 부족한 경우 용량 확대 등을 위한 비용을 추가로 부과·징수 할 수 있다.</p> <p>④ 원인자부담금은 타 행위 개발 계획 승인시 부과하고 준공전 납부토록 하되 분할납부 등 필요한 사항은 조례시행규칙으로 정한다.</p>	<p>로 하며, 기존 공공하수관거의 용량이 부족한 경우 용량확대 등을 위한 비용을 추가로 부과·징수 할 수 있다.</p> <p>④(개정안과 같음)</p>	
<p><u>〈신설〉</u></p>	<p>제25조(분뇨 수집·운반 수수료 등 의 부과·징수)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4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분뇨를 수집·운반 및 처리함에 있어 수수료를 다음 각호와 같이 부과·징수한다.</p> <p>1. 분뇨(오수처리시설·정화조의 오수 및 찌꺼기를 포함한다)의 수집·운반 및 처리 수수료는 [별표]</p>	<p>제24조(분뇨 수집·운반 수수료 등 의 부과·징수) ① (개정안과 같음)</p> <p>1. 분뇨(오수처리시설·정화조의 오수 및 찌꺼기를 포함한다)의 수</p>	<p>- 조항 정리</p>

	<p><u>6]</u>의 기준에 따라 산정하여 부과·징수한다.</p> <p>2. 분뇨의 수집·운반을 분뇨수집·운반업자에게 대행시킨 경우에는 대행업자로 하여금 수수료를 징수하게 할 수 있다.</p> <p>3. 분뇨수집·운반업자는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징수한 수수료 중 분뇨 처리에 관한 수수료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p> <p>② 제1항의 수수료를 부과·징수하는 경우에는 당해 건축물의 소유자에게 부과·징수한다. 다만, 소유자에게 부과·징수함이 곤란한 경우는 당해 건축물의 관리자 또는 사용자에게 부과·징수할 수 있다.</p>	<p>집·운반 및 처리 수수료는 <u>별표 6</u>의 기준에 따라 산정하여 부과·징수한다.</p> <p>② (개정안과 같음)</p>	
<p>제19조(감면) 시장·군수·구청장은 공익상 기타 필요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조례시행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용료, 점용료, 기타의 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다.</p>	<p><u>제26조(감면 등)</u>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조례시행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공하수도 사용료, 공공하수도 점용료, 분뇨 수집·운반·처리 수수료, 원인자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다.</p> <p>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의 규</p>	<p><u>제25조(감면 등)</u> ① (개정안과 같음)</p>	<p>- 조항 정리</p>

	<p>정에 의한 보호대상자</p> <p>2.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의 규정에 의한 재난사태선포지역 또는 특별재난지역의 대상자</p> <p>3. 제9조에 따라 중수도를 설치하여 사용하는 자</p> <p>4. 공공하수처리시설 재이용수를 공급받아 사용하는 자</p> <p>5. 시장·군수·구청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조례시행규칙으로 정하는 자</p> <p>② 제1항 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중수도 또는 재이용수 사용자에 대한 공공하수도 사용료 감면기준은 <u>별표7</u>과 같다.</p>	<p>② 제1항 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중수도 또는 재이용수 사용자에 대한 공공하수도 사용료 감면기준은 <u>별표9</u>과 같다.</p>	
<p>제20조(부과액 조정 신청) ① 사용료·점용료·원인자부담금 기타 이 조례에서 규정하는 납부금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그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이내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부과액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p> <p>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과액 조정신청이 있는 때에는 시장·군</p>	<p>제27조(이의신청) ① 공공하수도 사용료, 공공하수도 점용료, 분뇨 수집·운반·처리 수수료, 원인자부담금의 부과·징수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그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이의신청할 수 있다.</p> <p>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의 방법과 처리절차 등에 관</p>	<p>제26조(이의신청) ① (개정안과 같음)</p> <p>② (개정안과 같음)</p>	<p>- 조항 정리</p>

<p><u>수·구청장은 60일이내에 이에 대한 결정을 하고 통지하여야 한다.</u></p>	<p>하여는 지방세법 제73조 및 제75조 내지 제79조의 규정을 준용한다.</p>		
<p>제18조(가산금)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공공하수도의 사용료·점용료·원인자부담금 기타 이 조례에서 정하는 납부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체납된 금액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p> <p>② 공공하수도관리청은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로부터 매1월이 경과할 때마다 납부된 금액의 1천분의 12에 상당하는 증가산금을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증가산금을 가산하여 징수하는 기간은 60월을 초과하지 못한다.</p>	<p>제28조 (가산금 및 독촉)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공공하수도 사용료, 공공하수도 점용료, 분뇨 수집·운반·처리 수수료, 원인자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때에는 체납된 금액에 대하여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p> <p>② 제1항의 경우에 있어서 시장·군수·구청장은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은행납인 경우에는 &lt;50일&gt; 이내)에 10일이내의 납부기한을 불인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p>	<p>제27조 (가산금 및 독촉) ① (개정안과 같음)</p> <p>② (개정안과 같음)</p>	<p>- 조항 정리</p>
<p>제24조(권한의 위임) 시장 또는 군수는 다음의 권한을 자치구가 아닌 구의 구청장, 수도사업소장, 읍장 또는 면장에게 위임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u>영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배수설비설치신고 등의 접수</u></li> <li>2. <u>제8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의</u></li> </ol>	<p>제29조(권한의 위임) 시장 또는 군수는 다음의 권한을 자치구가 아닌 구의 구청장, 수도사업소장, 읍장 또는 면장 등에게 위임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영안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배수설비설치신고 등의 접수</li> <li>2.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개</li> </ol>	<p>제28조(권한의 위임) 시장 또는 군수는 다음의 권한을 자치구가 아닌 구의 구청장, 수도사업소장, 읍장 또는 면장 등에게 위임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영안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배수설비설치신고 등의 접수</li> <li>2.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개</li> </ol>	

<p><b>접수</b></p> <p><u>4.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일시사용 신고</u></p> <p><u>5.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준공검사</u></p> <p><u>〈신설〉</u></p> <p><u>2.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공사의 시행</u></p> <p><u>〈신설〉</u></p> <p><u>6. 제12조 및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료의 징수</u></p> <p><u>7.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하수배출량의 인정</u></p> <p><u>8.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하수배출량의 조사</u></p> <p><u>9.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점용료의 징수</u></p> <p><u>10.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원인자부담금의 징수</u></p> <p><u>〈신설〉</u></p>	<p>시신고의 접수</p> <p>3.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일시사용신고의 접수</p> <p>4.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점용시설 또는 공작물의 준공검사</p> <p>5.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중수도설치신고의 접수 및 확인</p> <p>6.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배수설비 공사의 시행</p> <p>7.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배수설비 준공검사</p> <p>8. 제17조 내지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하수도 사용료의 징수</p> <p>9.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하수배출량의 산정</p> <p>10.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하수배출량의 조사</p> <p>11.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하수도점용료의 징수</p> <p>12. 제22조 내지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원인자부담금의 징수</p> <p>13.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의 징수</p> <p>14.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감면</p> <p>15.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의 접수 및 이에 대한 결정</p>	<p>시신고의 접수</p> <p>3.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일시사용신고의 접수</p> <p>4.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점용시설 또는 공작물의 준공검사</p> <p>5.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중수도설치신고의 접수 및 확인</p> <p>6.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배수설비 공사의 시행</p> <p>7.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배수설비 준공검사</p> <p>8. 제16조·제17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하수도 사용료의 징수</p> <p>9.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하수배출량의 산정</p> <p>10.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하수배출량의 조사</p> <p>11.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하수도점용료의 징수</p> <p>12. 제21조 내지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원인자부담금의 징수</p> <p>13.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의 징수</p> <p>14.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감면</p> <p>15.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의 접수 및 이에 대한 결정</p>	<p>- 조항 정리</p>
--	---	--	----------------

<p><u>12.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감면</u></p> <p><u>13.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부과액 조정 신청의 접수 및 이에 대한 결정</u></p> <p><u>15. 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u></p> <p><u>11.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가산금의 징수</u></p> <p><u>14.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의 제한</u></p>	<p><u>16. 법 제80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u></p> <p><u>〈 삭제〉</u></p> <p><u>〈 삭제〉</u></p>	<p><u>16. 법 제80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u></p>	
<p>제25조(조례시행규칙에의 위임)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이외에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 한 사항은 조례시행규칙으로 정 한다.</p>	<p>제30조(조례시행규칙에의 위임)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 한 사항은 조례시행규칙으로 정 한다.</p>	<p>제30조(조례시행규칙에의 위임)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 한 사항은 조례시행규칙으로 정 한다.</p>	
<p>부 칙</p> <p>이 기준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 한다.</p>	<p>부 칙</p> <p>이 조례는 2007년 9월 28일부터 시행한다.</p>	<p>부 칙</p> <p>이 조례는 2007년 00월 00일부 터 시행한다.</p>	

## 물가대책위원회 심의결과

「월드재전·경마재전·경마재전」



제천시



수신자 제천시환경사업소장  
(경유)

## 제목 제천시 물가대책 위원회 심의결과 알림

하수도 사용률 조정을 위하여 개최한 예천시 물기대책위원회, 개최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1. 개최일시 : 2007. 8. 1. ~ 3
  2. 심의위원 : 제천시 물가대책위원회 21명
  3. 심의방법 : 서면심의
  4. 심의내용 : 제천시 하수도 사용률 조정(안)
  5. 회의결과 : 원안승인 (제 20명 원안승인, 1명 출석)

제 1부 : 물가대책 위원회 신의의 경서

제천시장

관인생략

\*刀耕而犧牛羊 以日食 乃無凶旱之歲

卷之三

사원 지역 경제부-16211 ( 2007.08.07. ) 접수 제천시율경사인소-10576 ( 2007.08.07. )  
우 600-701 출신 제천시 서창진 16(천년동 12-2) /http://www.okjc.net  
전화 048-841-5051 /전송 048-841-8079 / 1to1@infotramail.net /문서

## 물가대책위원회 심의의결서

심의번호 : 제 2007 - 1 호  
 안 전 : 제천시 하수도 사용율 조정  
 제출자 : 환경사업소장 박 대 수

2007. 8. .

아래와 같이 심의 의결함

심의 위원				심의의결			서명	비고
구분	소속	직책	성명	원안 승인	조정 승인	불승인		
위원장	제천시청	부시장	김재갑	○			김재갑	
위원	대한미용협회 제천시지부	지부장	장정분	○			장정분	
"	제천시 농민단체협의회	회장	김동식	○			김동식	
"	제천시 새마을부녀회	회장	정영희	○			정영희	
"	제천 YWCA	회장	오선균		(관련부록)			
"	바르게살기협의회	회장	이연덕	●			이연덕	
"	한국노총제천단양지부	지부장	최준수	○			최준수	
"	제천시의회	의원	권건중	○			권건중	
"	새마을지도자 제천시협의회	회장	김호찬	○			김호찬	
"	대한목육업 제천시지부	지부장	박성수	○			박성수	
"	제천시 여성단체협의회	회장	이유순	○			이유순	
"	대한주부클럽 제천시지회	지부장	전순희	○			전순희	
"	농협중앙회 제천시지부	지부장	이희수	○			이희수	
"	세명대학교 경영대학원	원장	박영배	○			박영배	
"	제천·단양 축산업협동조합	조합장	진한구	○			진한구	
"	휴계업 제천시지부	지부장	정재남	●			정재남	
"	대한이용업 제천시지부	지부장	조상윤	○			조상윤	
"	음식업조합 제천시지부	지부장	최봉통	○			최봉통	
"	제천시청	미래경영 본부장	윤종섭	○			윤종섭	
"	제천시청	행정복지 본부장	최한섭	○			최한섭	
간사	제천시청	지역경제 팀장	지선대	○			지선대	

\* 무순